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 731-6112

서울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2727호 2006. 10. 19.(목)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06-1541호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제2006-1552호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제2006-1555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

※ 서울시보게재를 의뢰한 각급 기관에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보 게재내용은 발행일에 서울시 사무자동화 및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 게재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TEL. (02)731-6112
- 서울시보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때는 다음날 발행.
- 서울시보게재접수는 D-3일까지 접수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접수마감>

월요일 14:00

- ※ 시보게재접수를 중복되지 않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보를 발행한 후 접수되는 경우)
-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원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 ※ 중복된 공고(신문, 관보, 시보, 구보)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속>

공 람									
--------	--	--	--	--	--	--	--	--	--



제2006-1559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안 입법예고 6

◆고 시

- 제2006- 348호 금호제15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10
- 제2006- 349호 2006년도 건물시가표준액 변경결정 12
- 제2006- 351호,355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13
- 제2006- 352호 도시계획사업(하천)실시계획변경인가 15
- 제2006- 353호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 16
- 제2006- 354호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불광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 18
- 제2006- 35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도로) 실시계획 변경 21
- 제2006- 357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21

◆공 고

- 제2006-1532호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및 폐업신고 24
- 제2006-1535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자 행정처분 24
- 제2006-153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 실시 25
- 제2006-1544호,154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26
- 제2006-1546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폐기 27
- 제2006-1551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28
- 제2006-1556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 29
- 제2006-1557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29
- 제2006-1561호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30
- 제2006-1568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 35

◆구 고 시

- 제2006- 6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지형도면(성동구) 37
- 제2006- 95호 도시관리계획(정릉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성북구) 37
- 제2006- 6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강북구) 40
- 제2006- 43호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실시계획 변경인가(노원구) 45
- 제2006- 95호 제1종지구단위계획(충정지구) 변경(획지계획 : 공동, 단독개발)결정(서대문구) 58
- 제2006- 3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인가(양천구) 58
- 제2006- 39호 성산연립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양천구) 59
- 제2006- 81호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승인(강서구) 59
- 제2006- 3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금천구) 60
- 제2006- 51호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영등포구) 60
- 제2006- 72호,73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실시계획변경인가(동작구) 61
- 제2006- 74호 주택재건축사업변경인가(동작구) 63
- 제2006- 75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주차장, 도로)실시계획인가(동작구) 63

제2006- 46호	잠실아파트지구개발 지형도면(변경)(송파구)	74
제2006- 47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송파구)	75

◆구공고

제2006-460호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교통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용산구)	77
제2006-650호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 제안에 따른 공람(성동구)	77
제2006-614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열람(중랑구)	80
제2006-59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강북구)	82
제2006-548호	도봉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도봉구)	88
제2006-58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구로구)	88

◆사업소공고

제2006- 1호	보관금 및 보관물품 수령안내(여성보호센터)	90
제2006- 23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성동소방서)	94
제2006- 6호	방염처리업 등록(양천소방서)	94
제2006- 24호	소방시설업 등록(구로소방서)	94
제2006- 41호	소방시설업 등록(송파소방서)	94
제2006- 24호	소방시설업 등록(강남소방서)	95

◆기 타

제2006-216호,217호,218호	하천점용허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96
제2006-219호	하천점용(재)허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96
제2006-220호	하천점용(변경)허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97
제2006-221호,22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97

자치법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541호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대기오염 저감과 도심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저공해자동차 및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중 전자태그 부착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 “저공해차량”에 대한 용어를 규정함.
 - 혼잡통행료의 면제대상을 추가로 규정함.
 - 저공해차량중 전기·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자동차
 - 혼잡통행료의 100분의50 감면 규정을 신설함.
 - 배기량 800cc이하 미만의 자동차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 저공해차량중 DOC부착 차량, LPG차량 (장애인 및 영업용 제외)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별관 1동 2층 교통계획과, 전화: 3707-9713,

FAX : 3707-9729, E-mail : hd1288@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552호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민·관이 협력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이를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환경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 서울시청 별관 1동 7층 환경과, 전화: 02)6321-4082, FAX: 02)3707-9529, E-mail: jk5864@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555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2006.7.19. 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 및 융자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자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융자(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정함.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나. 동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국제회의기획법」을 추가로 신설하고, 그 융자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함.

구분	융자범위	융자한도	융자기간
경영안정자금	연간 매출액이나 추정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분의 신고매출액	5억원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시설자금	1회전 소요자금의 100퍼센트 이내	8억원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다.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으로써 융자를 해 주는 경우에는 융자금액 결정기준인 매출액기준에 의한 결정금액을 초과하여 신용보증금액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라. 융자대상자가 융자결정의 통보를 받은 직후 대출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시장의 사전승인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융자금을 분할하여 대출받는 경우로서 최초 분할 대출을 받은 이후에는 대출기관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
 마. 앞으로는 동 기금의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시장(참조: 산업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별관 1동 10층 산업지원과, 전화: 3707-9318, FAX: 3707-9329, E-mail: etoile@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559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화재예방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이나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건축물·차량·선박·선박구조물·산림 및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 하되,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은 제외하도록 함.
- 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위치·구조 및 관리기준〉

설비 구분	위치·구조 및 관리기준
불티가 생기는 설비	(1)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접지에 의한 방법 (나) 공기중의 상대습도를 70%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3)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기	(1) 용접·용단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의 실시 (나) 주위에 인화성 물질의 제거 (다) 용접·용단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라)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기타 소화용구의 배치 (마) 작업구역의 전기·가스·소방시설과 인명대피시설의 정상 작동 및 안전상태 유지 (바)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실시 (사) 기타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
---------------------	--

다. 위 표의 세부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1) 일반기준

-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아래 표 개별기준의 1/2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사항	해당 법 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 피움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법 제57조 제1항	20	
(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법 제5조 제1항	200	
1)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의 경우			
가) 1차 위반시			50
나) 2차 위반시			100
다) 3차 위반시	150		
라) 4차 이상 위반시		200	

별첨 : 규제영향 분석서

<p>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예방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6-7, 전화: 02)3706-1611, FAX : 02)3706-1619, E-mail :</p>	<p>yosoolbae@yahoo.c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p>
---	--

규제영향 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 사항	부서명 : 소방방재본부 예방과 작성자 : 예방과장 지방소방준감 광세근 예방팀장 지방소방령 운영철 담당자 지방소방경 고 승				
4. 근거법령등	○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제57조제2항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관 련	규제수	2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input type="checkbox"/>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소방기본법 제19조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관서장에게 신고토록 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대상지역 및 신고방법을 정하는 것이고, 소방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밖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을 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화재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임 <input type="checkbox"/> 분석방법 ○ “규제가 연간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규제” 해당여부 ⇒ 해당없음 ○ “피규제자가 연간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해당여부 ⇒ 해당없음 ○ “명백하게 경쟁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해당여부 ⇒ 해당없음				
6. 신설 규제의 내용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피움 등’의 행위신고 방법 - ‘불피움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행위개시 전까지 관할소방서장 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에게 서식에 따라 구두(전화포함) 또는 서면으로 신고 ○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 -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가 출동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소방기본법 제19조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불

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관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고, 신고해야 하는 대상지역 및 신고방법을 정하도록 위임되어 신고방법을 정하는 것임
○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

<p>아니하는 그밖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불티가 생기는 설비 및 용접·용단기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화재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p> <p>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는 일정서식을 마련하여 관할소방서장 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에게 하도록 하고 신고의 편의를 도모하여 구두(전화포함) 또는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는 규제가 필요함 ○ 소방기본법에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화재예방의 목적달성을 기하는 것과 같이, 그밖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대해 화재예방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가 필요함 <p>다. 규제의 목표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로 화재예방의식 고취와 소방자동차의 오인출동 감소 ○ 불티가 생기는 설비 및 용접·용단기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화재예방의 실효성 확보 <p>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p> <p>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방법을 일정 양식에 의거 관할 소방서장 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에게 구두(전화포함) 또는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불티가 생기는 설비 및 용접·용단기의 안전관리로 대형화재예방 및 인 	<p>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없음</p> <p>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방법 및 그 밖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전 홍보를 강화하면 규제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p>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 부담은 없으며, 신고에 따른 소방차량의 오인출동의 감소와 소방차량출동에 따른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음. ○ 불티가 생기는 설비 및 용접·용단기의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규제는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제·사회적 편익이 도모됨 <p>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p> <p>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방법을 일정 양식에 의거 관할 소방서장 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에게 구두(전화포함) 또는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어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 소방기본법에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화재예방의 목적달성을 기하는 것과 같이, 그밖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대해 화재예방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로서 일관성이 있으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	---

- 나.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 근거 :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제57조제2항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존속기한 : 없음
- 5.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절차 등의 적정성
 -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시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시민 편의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양식에 의한 구두(전화포함) 또는 서면신고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48호
 금호제15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280번지 일
 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도

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금호제15주택재
 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금호제15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금호제15주택재개
 발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m ²)	비 고
신규	금호제1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성동구 금호동1가 280번지 일대	64,768.3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m ²)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64,768.3	-	64,768.3	1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64,768.3	감) 64,768.3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64,768.3	64,768.3	100.00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m ²)			비 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952.9	증)62,815.4	64,768.3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10,798.3	10,798.3	16.68	
	도로	-	증) 2,128.7	2,128.7	3.29	무상귀속
	어린이공원	-	증) 3,359.6	3,359.6	5.19	무상귀속
	학교	-	증) 5,310.0	5,310.0	8.20	
택 지	소 계	1,952.9	증)52,017.1	53,970.0	83.32	
	택 지1	-	증)49,667.1	49,667.1	76.68	분양주택용지
	택 지2	-	증) 2,350.0	2,350.0	3.63	임대주택용지
	택 지3	827.0	-	827.0	1.28	종교시설(준치)
	택 지4	760.9	-	760.9	1.17	종교시설
	택 지5	365.0	-	365.0	0.56	공공청사

마.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도시 계획 시설	가정	중로	1	(1)	20	보조간선 도로	일반	460	금호동1가 168-63	금호동1가 126-1	-	서고 144 (98.4.20)	
	변경	중로	1	(1)	20	보조간선 도로	일반	460	금호동1가 168-63	금호동1가 126-1	-	-	도로산형조정 (152m)
	신설	중로	2	(1)	20	보조간선 도로	일반	364	금호동1가 527-1	금호동1가 585	-	-	대상지 편으로 2.5m확폭
	폐지	소로	3	9	6	국지도로	일반	320	금호동1가 601	금호동1가 272-1	-	서고 370 (87.5.29)	

2)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등) 결정조서

결정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명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계획시설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금호동1가 345번지 일대	-	증)3,359.6	3,359.6	-	

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결정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명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계획시설	신설	학교	중학교	금호동1가 339번지 일대	-	증) 5,310.0	5,310.0	-	

4)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조서

결정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구분	규 모 (m)	최 초 결정일	비 고	
	명칭	세분류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도시 계획 시설	가정	본선 (방화~고덕)	고속철도 (5호선)	강서구 개화동 306번지 일대	강동구 하일동 579번지 일대	-	같이	47,400m	1990. 10.13.	건고 제695호
	변경	본선 (방화~고덕)	고속철도 (5호선)	강서구 개화동 306번지 일대 (성동구 금호동1가 523-1번지 일대)	강동구 하일동 579번지 일대 (성동구 금호동1가 179-7번지 일대)	-	같이 폭 높이	방화방향: 300.8m 마천방향: 388.9m 4.9m 해수면기준위: 0.805~21.155 해수면기준위: 7.562 ~29.162		()구간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

바.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신설	성동구 금호 제1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64,768.3	성동구 금호동1가 280번지 일대	414	2	-	2	410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성동구 금호 제1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64,768.3	택지1	49,667.1	금호동1가 184-5일대	172,142 이하	공동주택(분양)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21.18 이하	21 이하	
신설			택지2	2,350.0	금호동1가 600-1일대	6,764 이하	공동주택(임대)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21.18 이하	21 이하	
기정			택지3	827.0	금호동1가 266일대	해당용도지역에 부합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적용					
신설			택지4	760.9	금호동1가 561일대						
신설			택지5 (공공청사)	365.0	금호동1가 444-7일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용 : 80% 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 법령에 의함								

사. 사업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아.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감)26세대

- 기존세대수 1,110세대 → 계획세대수 1,084세대

2.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3707-8237) 및 성동구청 주택과(☎ 2286-5607)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49호

2006년도 건물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건물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2006년도 제2차 건물시가표준액 변경결정·고시

2. 변경고시 내역

○ 상 가

소재지	물건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수	가감 산율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수	가감 산율	
동대문구 회기동 60-94		100	125	110	110	100	80	110	110	상가주택
동대문구 전농동 597-10		100	125	110	120	100	100	80	60	상가주택
중랑구 상봉동137-15	상봉오피스텔	100	125	110	140	100	100	80	110	
강북구 수유동 50-75	수유주상복합빌딩	100	125	112	155	100	90	80	155	
강북구 수유동 63	수유프라자	120	125	122	140	100	125	100	140	
도봉구 창동 581-28	삼익쇼핑	100	125	112	135	100	100	80	100	
도봉구 도봉동 603-5	1층 상가	100	125	108	115	100	115	108	110	
도봉구 창동 648	우전빌딩	100	125	110	120	100	125	80	110	상가주택
서대문구 충정로2가	유원골든오피스텔	120	125	130	145	120	125	130	100	
구로구 구로동 98	대림오피스타워	120	125	122	125	100	125	122	100	
구로구 구로동 108	현대파크빌	120	125	118	125	100	125	118	100	
구로구 고척동 269-1	개봉프라자	100	125	110	125	90	80	80	100	
관악구 봉천동 1698-1	코오롱상가	125	125	110	95	80	80	80	95	
강동구 길동 160	신동아상가	100	125	114	115	20	30	80	100	

○ 오피스텔

소재지	물건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수	가감 산율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수	가감 산율	
중랑구 상봉동 137-15	상봉오피스텔	100	125	110	110	100	100	80	100	
서대문구 충정로 2가	유원골든오피스텔	120	125	130	145	120	125	130	100	
구로구 구로동 108	현대파크빌	120	125	118	113	100	125	118	1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09호(2005.4.
 20)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49-3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
 25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
 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
 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가.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학교)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2005. 5.24 학습관 건축허가시 허가 조건인 기존 배양관을 멸실하기 위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구분	토지이용계획(㎡)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대학)	중랑구 면목동 49-3 일대	22,411.1	계	22,411.10		22,411.10	
				건축부지	8,341.09	감)432.58	7,908.51	
				주차장부지	1,326.51		1,326.51	
				도로부지	3,459.38		3,459.38	
				운동장부지	2,504.80		2,504.80	
				녹지부지	6,779.32	증)432.58	7,211.90	

2) 건축계획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의 범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7.22이하	35.30이하	193.16하	185.40이하	7층이하(30m이하)	7층이하(30m이하)	

※ 단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 상세내용은 고시도면에 의함.

다. 관계도면 : 생략-2005.4.20 고시된 도면(배양관 제외)으로 같음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6360-4781) 및 중랑구청 도시정비과(전화 4903-384)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5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351호(2004.11.5)로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6-21번지 일대 삼육대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가.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관 등 증축에 따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 하는 것임.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시설의 구분	토지이용계획면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학 교 (대학)	노원구 공릉동 26-21번지 일대	계	151,283	-	151,283	
			건축 부지	26,334.59	(증)239.41	26,574	
			녹지 부지	49,687.75	(감)24,346.75	25,341	
			조경 부지	-	(증)21,314.00	21,314	
			도로 부지	58,934.20	(감)4,921.20	54,013	
			주차장부지	-	(증)4,908.00	4,908	
			광장 부지	-	(증)2,807.00	2,807	
			운동장부지	16,326.46	(감)0.46	16,326	

- 건축계획 조서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기 존	변 경	기 존	변 경	기 존	변 경
자연녹지지역	18.00	18.00	47.00	46.00	5층이하	5층이하

※ 단 건축물의 규모, 위치등 세부시설조성계획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조서 포함)에 의함

다.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6360-4781) 및 노원구 도시관리과(전화 950-3385)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2호

도시계획사업(하천)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83호('78.3.9)로 도시계획시설(하천)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85호(2005.3.3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성북천 복개지상 건축물(상가·아파트)정비 및 하천복원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이 변경되었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성북구 삼선동1가자 13번지부터지74번지 성북천 복개지상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하천)

다. 사업의 명칭 : 성북천 복개지상 상가아파트(삼선A,B동)건축물정비 및 하천복원

라. 사업의 규모 : 삼선상가(A,B동) 연면적 8,532.64㎡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 초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006.12.31까지
 - 변 경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007.12.31까지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자.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성북구청 (주택과 ☎ 920-3380~1)에 관련도서 및 서

류를 비치하고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3호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

진관사 칠성각과 진관사 독성전을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고, 같은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사실을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개요

○ 문화재 지정개요

지정종별·번호	지정명칭	소재지번	수량 및 면적	구조·형식	건립연대	소유자
문화재자료 제33호	진관사 칠성각 (津寬寺 七星閣)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1동(18㎡) ※ 면적은 건축물대장이 아닌 건물 최돌출부를 기준으로 한 지적측량에 기초함	○ 목조 외층 ○ 맞배지붕 ○ 정면 겹처마·후면 홑처마 ○ 민도리	1907년 이전 추정	대한불교 조계종 진관사
문화재자료 제34호	진관사 독성전 (津寬寺 獨聖殿)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1동(8㎡) ※ 면적은 건축물대장이 아닌 건물 최돌출부를 기준으로 한 지적측량에 기초함	○ 목조 외층 ○ 맞배지붕 ○ 정면 겹처마·후면 홑처마 ○ 민도리	1907년 추정	

○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개요 : 총 1필지 / 총 64㎡

지 정 지 번	지 적	지 목	자장면적	소 유 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7,788㎡	종교용지	64㎡	대한불교 조계종 진관사

○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도면 :

〈별첨1〉 참조

2. 지정사유

불단(佛壇)이나 보살단(菩薩壇)에 속하는 건축물들을 제외하고 신중단(神衆壇)에 속하는 건축물로서는 서울 시내에 현존하는 예 중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건립연대가 가장 오래되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20세기 초 서울·경기 지역 사찰 건물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화방벽(火防壁)이 설치

되는 등 건물들이 창건될 당시의 시대적, 지역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전쟁을 거쳤음에도 원형 또한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 건축수법과 규모면에서 유형 문화재로 지정할 정도는 아니나 향토문화 계승 차원에서 보존 가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로 지정, 보존한다.

한편 문화재 보호구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2항 규정에 따라 두 건물의

가장 돌출된 지점을 연결하는 선 이내의 필요 최소한도 지역, 즉 진관외동 1번지의 7,788㎡ 가운데 64㎡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동 건물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

3.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필지 등에 미치는 주요 법적 제약사항

○ 문화재 지정대상 및 보호구역 지정 대상 토지

- 문화재보호법 제58조(준용규정) 제2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4조(허가사항)·같은 조례 제17조(행정명령) 및 제18조(신고사항) 규정의 적용 대상임

○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 외곽 50m 이내 지역

- 문화재보호법 제74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4조의2(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의 적용대상임

4. 지정일자 : 서울시보 게재일자

【별첨 1】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도면

[별지 제68호 서식]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교부번호: 서60번


토지소재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4필	축척	1/1200
측량자	2006년 6월 2일	측량성과도 작성자		2006년 6월 2일		
	지적기사			박대현	지적기사	이명수

현황표시

범례	명칭
—	건물선및석축선
아래	빈칸

면적표시

지번	부호	면적(㎡)
1	7	7724
보호구역	64	64
독성진	8	8
칠성각	18	18
아래	빈칸	



측량결과도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06년 6월 2일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본부 서대문구은평지적팀 (인)

미고 이 측량성과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301 - 12811일 99. 3. 12 승인 210mm*297mm, 520*420mm (특수비농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4호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불광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550, 551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05-72호(2005.3.17.)로 변경고시된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과 같은 법 제4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광제4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3조제6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가. 변경대상 : 은평구 구역별 계획 중 구역번호 8번

나. 변경내용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비 고
기정	c	8	불광동	550 551	2.6	190%	12층 이하	60%	1	주택 재개발사업	수복 (전면)	
변경	c	8	불광동	550 551	2.6	190%	12층 이하	60%	1	주택 재개발사업	수복 (전면)	구역추가 (0.03ha)

다. 변경사유 : 정비사업으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는 토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

2. 불광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명 칭	위 치	면 적(m ²)	비 고
불광제4주택재개발구역	은평구 불광동 550,551번지 일대	26,060	

나. 정비계획의 지정 사업

- 1) 정비사업의 명칭 : 불광제4주택재개발
 2)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m ²)	비 율(%)	비 고
계		26,060	100.0	
정비기반 시설	소 계	3,940	15.12	
	도 로	2,740	10.51	신설 및 확폭
	녹 지	1,200	4.61	
택 지	소 계	22,120	84.88	
	택 지(1)	19,620	75.29	분양아파트
	택 지(2)	2,500	9.59	임대아파트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및 결정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비 고
	등급	세분류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 정	중로	2	1	15	간선 도로	일반 도로	124	불광동 553-6	불광동 542-5	확폭
변 경	중로	1	1	20						
기 정	소로	3	1	4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26	불광동 8-133	불광동 542-5	확폭
변 경	소로	1	1	10						
기 정	소로	3	1	4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2	불광동 533-4	불광동 553-6	확폭
변 경	소로	3	1	6						
기 정	소로	3	2	4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42	불광동 8-271	불광동 8-124	확폭
변 경	소로	3	2	6						
기 정	소로	3	3	4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8	불광동 560-9	불광동 563-9	확폭
변 경	소로	3	3	6						
신 설	소로	3	4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3	불광동 560-4	불광동 562-9	신설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시설명	세분류			
신 설	녹 지 1	경관녹지	불광동 564-1 일대	680	
신 설	녹 지 2	경관녹지	불광동 565-2 일대	520	

4)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위 치	면 적 (㎡)	정 비 구 분 (동)				
		대 상	철거후 공동주택 건립	철거이주	개수	존치
불광동 550, 551번지일대	26,060	203	588 세대	203	-	-

나) 건축시설 계획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면적 (㎡)	건축시설 계획					
				건폐율	용적률	층수(높이)		연면적(㎡)	주된용도
신설	택지1	불광동 551-15일대	19,620	30% 이하	233.9% 이하	평균 16층 이하	18층 이하 (55.0m)	73,750 (지하포함)	분양주택
	택지2	불광동 563-11일대	2,500	25% 이하	233.9% 이하		10층 이하 (32.0m)	9,400 (지하포함)	임대주택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해 고시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적용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련법규에 의함						

다)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역명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불광제4구역	2,500	1	9,400	100	32㎡ 60세대 44㎡ 40세대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가) 변경결정 취지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인 은평구 불광동 550, 551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건축시설 계획과 부합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결정

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구역 내 변경사항)

기 정		감 (㎡)	변 경		비 고
용도지역	면 적(㎡)		용도지역	면 적(㎡)	
제1종 일반주거지역	16,980	15,596	제1종 일반주거지역	1,384	녹지1, 2 소로3류 3번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596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9,080	9,080	제2종 일반주거지역	9,080	

다. 사업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인가신청
 라.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에 의함
 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132세대
 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3707-8236) 및 은평구 주택과(☎ 350-1381)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도로)
실시계획 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33호(2001.4.25)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32호(2005.12.29) 및 제2006-218호(2006.6.29)로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도로) 실시계획 변경고시된 『양천권역 공영차고지 및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통개선기획단 버스지원반(☎ 3707-9741) 및 SH공사 사업1본부 택지설계팀(☎ 3410-716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27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자동차정류장, 도로)
 - 사업의 명칭 : 양천권역 공영차고지 및 주변도로 개설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일부 변경
 - 자동차 정류장 : 총면적 47,666㎡ (중 260㎡)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차고지 A=47,450.5㎡(중 44.5㎡)
- 건축물 7개동 연면적 5,299.6㎡ (중 27.04㎡)-옥외화장실 추가
- 도로 A=215.5㎡(중 215.5㎡) - 차고지외부 현황도로(지적측량도면 참조)
- 주변도로 개설 : B=6m~20m, L=688m : 변경없음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오세훈 (대행 : SH공사 사장 이철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없음
 - 사업의 착수일 : 2003. 07. 25
 - 사업의 준공일 : 2006. 11. 30
- 바. 공사설계도서 : 제2항의 관계도서 비치도면과 같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한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와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구 분		지차구	지구명		위 치	면 적(㎡)
			계	14개소		
주거 지형	2차 뉴타운 지구	용산구	한남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동, 동빙고동 일대	1,095,800	
		동대문구	이문·휘경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일대	1,001,473	
	3차 뉴타운 지구	성북구	장위	장위동 68-8번지 일대	1,851,020	
		노원구	상계	상계 3, 4동 일대	643,608	

구 분		자치구	지구명	위 치	면 적(m ²)
			계	14개소	11,737,407
주거 지형	3차 뉴타운 지구	은평구	수색·증산	수색동, 증산동 일대	877,400
		서대문구	북아현	북아현동 170-1번지 일대	821,000
		영등포구	신길	신길동 236번지 일대	1,469,910
		금천구	시흥	시흥동 212번지 일대	634,882
		동작구	흑석	흑석동 84-10번지 일대	898,610
		관악구	신림	신림동 1514번지 일대	537,100
		송파구	거여·마천	거여2동 202번지 일대	738,426
중심 지형	균형발전촉진지구	광진구	구의·자양	구의동 246, 자양동 680번지 일대	385,340
		중랑구	망우	망우동, 상봉동 일대	505,738
		강동구	천호·성내	천호동 453-19번지 일대	277,100

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구 분		자치구	지구명	위 치	면 적(m ²)
			계	2개소	4,745,041
주거 지형	시범 뉴타운 지구	성북구	길음	길음동 624번지, 971번지 일대	1,249,793
		은평구	은평	진관내·외동, 구과발동 일대	3,495,248

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른 안내

- 가.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으며,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음.
- 나.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2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거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함.
- 다.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 효력이 상실됨.

4. 관련도면 : 공람장소에 별도 비치

5.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본부 뉴타운사업1반(☎ 2171-2534), 뉴타운 사업2반(☎ 2171-2643), 뉴타운사업3반(☎ 2171-2679)
-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710-3388), 광진구 도시개발과(☎ 450-1433),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2127-4941), 중랑구청 균형발전추진단(☎ 490-3882), 성북구청 균형발전추진단(☎ 920-3771),

노원구청 도시정비과(☎ 950-3385),
은평구청 도시정비과(☎ 350-3826),
서대문구청 균형발전사업반(☎ 330-
1633), 금천구청 도시관리과(☎ 890-
2400), 영등포구청 균형발전추진반(☎
2670-3527), 동작구청 도시관리과(☎
820-9264), 관악구청 도시관리과(☎
880-3871), 송파구청 지역개발과(☎
410-1350), 강동구청 균형발전추진반
(☎ 480-1859).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532호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및 폐업신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신고
 및 폐업신고를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같은
 법제26조 제1호제2호 규정에 따라 이를 공
 고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장

■ 등록변경

신 고 인			변 경 내 용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변 경 전	변 경 후
제649호	(주)코엠 커뮤니케이션	이석희 최진열	○ 대표자: 이석희 ○ 소재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13-6 여의도플래시오피스텔604호	○ 대표자: 이석희, 최진열 ○ 소재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오피스텔102
제595호	인프릭스 인터넷서널(주)	박진원	○ 대표자: 정진언 ○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742-8 두양빌딩 4층 ○ 전화번호: 561-4370	○ 대표자: 박진원 ○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742-27 그린타워 101 ○ 전화번호: 561-4730

■ 폐업신고

신 고 인				신 고 사 항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폐업일자	사 유
제634호	(주)로니르	박병래	서울시 중구 충무로4가 126-1 일흥빌딩 303호	2006.9.25	업종변경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생활경
 제과(☎ 02-3707-93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직권등록취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535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자 행정처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행정

대 상 업 체			공제거래 해지일자	위반사항	관련법규 (방문판매법)	처분내용 (처분일)
등록번호	업체명(등록번호)	소재지				
제621호	제이유피닉스(주)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68-23 제이유피빌딩 5층	2006.9.19	소비자피해보상 (공제거래)계약해지	○ 제25조 제3항 ○ 제34조 제1항	등록취소 (2006.10.4)
제649호	(주)코엠 커뮤니케이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6 여의도 플렉시움오피스텔 604	2006.9.20	"	"	"
제646호	마이비즈닷컴(주) (舊 모이비즈)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1-13 사료회관 3층	2006.9.21	"	"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생활경제과(☎ 3707-9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53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25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나. 청문대상업자(당사자)

사업면허 번호	차량 번호	성명	주소
31684	서울31사9318	박철수	노원구 상계동 177-101호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개인택시운송사
업면허 취소

마. 처분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면허취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터미널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
전면허가 취소된 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9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

- 법 제76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제1항(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관련 [별표 2] 위반내용 제75호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사업면허취소

바. 청문 실시

- 기관명(부서명) : 서울특별시(교통지도단속반)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2호
종로소방서 4층(T.2171-2032)
- 일 시 : 2006. 10.27(금) 09 : 30부터
10 : 30까지(1시간)
- 장 소 : 교통지도단속반
- 주재자 : 교통지도단속반 지방행정사무
관 이 경 수

사. 유의사항

- 1) 귀하께서는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을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귀하께서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 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교통국 교통지도단속반(T. 2171-20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54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
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당 사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호(대표성명)	주 소		
113322	(주)두레코리아컴 (박 중 철)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1 고대이공캠퍼스 산학관 2층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기준미달 사항(기술자 부족)을 보완하지 않음	등록취소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1호, 제66조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3. 행정처분 일자 : 2006. 10. 13.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1)

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54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

1. 행정처분 내역

대 상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 호(대표자)	소 재 지		
110928	(주)태원시스템 (백 승 일)	서울시 금천구 시흥본동 886-14	기준미달 (자본금 실효)	영업정지 1월 (2006.10.16-11.15)
111046	선우정보통신(주) (이 성 봉)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23-7	기준미달 (자본금 실효)	영업정지 1월 (2006.10.16-11.15)
200022	(주)씨티앤에이 (지 성 일)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52-9 선경빌딩	기준미달 (자본금 실효)	영업정지 1월 (2006.10.16-11.15)
110682	현진텔레텍(주) (김 상 원)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15-3 1층	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2006.10.16-2007.1.15)
113091	(주)술다정보기술 (정 운 철)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16-10 삼우빌딩 지하층 1호	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2006.10.16-2007.1.15)
113092	(주)에스티앤아이 (민 기 동)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75-14 두성빌딩 9층	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2006.10.16-2007.1.15)
200229	(주)에프씨파워콤 (최 영 자)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32 대림빌딩 2층	기준미달 (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5일 (2006.10.16-10.30)
200312	(주)테노시스 (정 동 호)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80 우림라운스밸리2차 1210호	기준미달 (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5일 (2006.10.16-10.30)
200173	(주)봄바디어트랜스포테이션 (레이먼트 티베틀러)	서울시 중구 소공동21 삼화빌딩 4층	기준미달 (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5일 (2006.10.16-10.30)
113304	대현아이앤씨(주) (천 인 택)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13-6 태종빌딩 2층	기준미달 (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5일 (2006.10.16-10.30)
113258	정경전기통신(주) (정 영 구)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984 유통상가 16동 301호	기준미달 (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월 (2006.10.16-11.15)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 제66조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546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폐기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폐기하고 동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폐기 사유 : 서울특별시 창의추진반 | 소속기한 만료
 2. 직인명 및 폐기일자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폐기인명	폐기일자	비 고
창의추진반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2006.10.13	
창의추진반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2006.10.1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551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 특별 시 장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0507	2006.9.27	(주)카이저텍 유대열 110111-3487489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5 충정리시운 425호
2	200508	"	(주)원광전설 장원석 110111-2232190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7-42
3	200509	"	(주)하나로유비쿼터스 이태철 110111-3508516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5-5 도양빌딩 3층
4	200510	"	(주)엘트정보기술 김용호 110111-3042390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609-1 한성상가 비동 425호
5	200511	"	(주)디씨엔미디어 차갑열 110111-3417064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188-5 성산빌딩 202호
6	200512	2006.10.12	(주)고매컴 이승일 110111-3500257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28-7 은혼빌딩 3층
7	200513	"	월드건설(주) 조규상 조대호 110111-034633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7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8	200514	2006.10.12	(주)디엔알텔레콤 장영현 110111-3482934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32-29 401호
9	200515	"	이주씨스템(주) 이복균 110111-1066607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87-1
10	200516	"	(주)지아이테크놀러지 홍영우 110111-1684920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비동 1410호
11	200517	"	하나로중량텔레콤(주) 주영미 110111-3510404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28-10 에스지타워 2층 201호
12	200518	"	(주)카이즈 김성환 110111-3520461	서울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12-3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실(02-6360-4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556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 종	등록일자
서울E-3-082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 건축사사무소	이한용 고봉철	강남구 논현동 101-14	110111-1395858	전문설계업(2종)	2006.10.13

- 공고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생활경제과
(02-3707-933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557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3항·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처분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처분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허가취소)을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1. 해당자			2. 위반내용	3. 관계법규	4. 처분사항	5. 처분일
허가번호	성명	주소				
2-강과-0061	조진호	서울시 송파구 가락시영A 38-409	3개월거래무실적 ('06.4월~6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제82조, 동법시행규칙제56조	중도매업 허가취소	2006. 9.26
2-강과-0202	신근영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143-14	3개월거래무실적 ('06.4월~6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제82조, 동법시행규칙제56조	중도매업 허가취소	2006. 9.26

3-1. 관계법규 및 조문내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3항 및 제4항

③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3, 2. 개별기준, 다. 중도매인행정처분 11.

•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하는 때 : 3개월 무실적 - 허가취소

※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과 전화 6321-4065, 팩스 3707-9399, 담당자 : 안형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561호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1.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예정인원	비고
금융재산추적 전문요원	전임 지방계약직 공무원 '다'급	1명	

2. 시험방법

-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심사)
- 나. 2차시험 : 면접심사(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채용자격 기준'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채용자격 기준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금융업법인에 근무하면서 채권확보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금융업법인에 근무하면서 채권확보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채용예정자의 직무수행내용

- 가. 지방세 체납자 금융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등)추적조사
- 나. 지방세 체납자 금융재산 채권확보 및 추심

- 다. 지방세 체납징수관련 금융기관 부당 행위개선
- 라. 금융재산관련 지방세 체납징수기법 개발
5.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이내(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채용기간 연장 가능)
6. 시험일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일정을 개별통보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10. 26. (목)~10. 31.(화) (근무시간에 한함)
-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세무과 (서소문별관 2동 5층)
-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단체신청은 받지 않음)
8. 합격자 발표
-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개별통보)
- 나. 최종합격자 발표(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9.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1')
- 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2,3,4')
-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라. 경력증명서 1부
- 마.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7,000원)첨부(서소문별관 1동 1층 민원실에서 판매)
10.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지방계약직공무원 '다급'에 상응하는 연봉(30,204천원)이며,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함.
11. 응시자 주의사항
- 가.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나.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

- 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라.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마. 응시자의 신원 및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세무과(3707-8676, 3707-8779, 담당자 배정희)로 문의 바랍니다.

<양식 1>

응시원서

서울특별시장 귀하

본인은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6년 월 일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조하 여 작성할 것.	주소	(통번) 전화 :					
	학력 (최종)	대학교 이하	년 월 일 학교(과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대학원	년 월 일 학교(과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 응시 번호				성명	(한글)	
						(한자)	
주민 등록 번호							~

응시원서 (부분) 지원분야 (금융재산 추적분야)					사진 (1)		
* 응시 번호				성명	(한글)		
					(한자)		
주민 등록 번호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으 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응시 번호	응시표 지원분야 (금융재산 추적분야)			성명 (한글)			사진 (2)	
성명	* 응시 번호	주민 등록 번호			~			
		2006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주소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 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 세무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엔 응시표, 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사진 통보된 시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한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작성요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양식 2>

기재한다.

- ② 학 력 : 대학교 이하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졸업·재학·수료·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성 명 : 정자로 기재한다. (3군데)
- ④ 주민등록번호 : 정자로 기재한다.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⑤ 응시수수료 첨부 : 응시원서(부분) 좌측 여백에 첨부

사 진 (3cm×4cm)				이 력 서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주 소						자택전화				
E-mail						휴대전화				
호적관계		호주와의 관계				호주성명				
학위논문 제목 (석시이상 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학력 및 경력사항			발령청				

<양 식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년월일 :

○ 응시동기

○ 주요경력소개

○ 컴퓨터활용능력(엑셀 등)

2006. . . .
작성자 ○ ○ ○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편집용지 여백 : 위쪽 20,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15, 머리말 10, 꼬리말 10, 제본 0
 - 글자모양 : 신명태명조, 제목 24point, 소제목 14point, 본문 13point

<양 식 4>

직무수행계획서

성 명 :

생년월일 :

○ 지방세 체납자 금융재산(예금,보험,증권,채권 등) 추적조사

○ 지방세 체납자 금융재산 채권확보 및 추심

○ 지방세 체납징수관련 금융기관 부당행위개선

○ 금융재산관련 지방세 체납징수기법 개발

2006. . . .
작성자 ○ ○ ○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4. 채용예정자의 직무수행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편집용지 여백 : 위쪽 20,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15, 머리말 10, 꼬리말 10, 제본 0
 - 글자모양 : 신명태명조, 제목 24point, 소제목 14point, 본문 13point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568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5(2003.11.17)호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되고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2004-21(2004.4.10)호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봉권역 공영차고지』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68호(1997.3.6)로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87호(2003.4.9)로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된 택지개발지구내 상암공영차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용되는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보하고 미 수령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계획(안)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

○ 사업대상 토지조서

- 1) 도봉권역 공영차고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341-1일대

연번	소재지 동 명	지 번	지목	필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권 리 관 계			비고
						성명	주 소	구분	권리자	권리자주소	
1	도봉동	288-15	주	918	918	서울시					
2	도봉동	308	주	347	347	서울시					
3	도봉동	322	잡	106	106	서울시					

- 나) 사업의 명칭 : 도봉권역 공영차고지 외1개소 조성공사
 - 2) 사업시행구간(위치)
 - 가) 도봉 공영차고지 : 도봉구 도봉동 341-1일대
 - 나) 상암 공영차고지 : 마포구 상암택지 개발지구내 자동차정류장(1,2) 결정부지
 - 3) 사업의 규모
 - 가) 도봉권역 공영차고지 : 30,294㎡ (버스주차장 및 부대시설)
 - 나) 상암 공영차고지 : 9,430㎡ (버스주차장 및 부대시설)
 - 4)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번지
 - 나) 성 명 : 서울특별시장(서울시건설안전본부장)
 - 5) 사업의 기간 : 2006.12월말~ 2007.12.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및 공공지설물 귀속 및 양도 사항 : 별첨
 - 7)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간 (열람시간 09 : 00~18 : 00)
- 다. 열람장소 :
- 사업계획 : 서울특별시 교통개선기획단 버스지원반(☎ 3707-9740, 담당 : 강철규)
 - 사업시행 :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 건설1부(☎ 3708-2422, 담당 : 정기찬)

연번	소재지 동 명	지 번	지목	필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리관계			비고
						성명	주소	구분	관리자	관리자주소	
4	도봉동	341-1	주	23,313	23,313	서울시					
5	도봉동	319	대	247	247	서울시 국방부					
6	도봉동	320	대	56	56	서울시 국방부					
7	도봉동	321	대	44	44	국방부					
8	도봉동	353-6	주	3,628	3,628	도봉구					
9	도봉동	353-30	주	545	545	도봉구					
10	도봉동	326	주	64	64	재무부					
11	도봉동	337-1	잡	56	56	재경원					
12	도봉동	337-14	잡	310	310	재경원					
13	도봉동	337-15	잡	210	210	재경원					
14	도봉동	353-11	주	15	15	재경원					
15	도봉동	353-9	주	399	399	건교부					
16	도봉동	353-21	주	31	31	건교부					
계				30,289	30,289						

2) 상암 공영차고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택
지개발예정지구내 도시계획시설(자
- 상암택지지구내 보상완료 토지로서 지번 및 지적 미확정 상태

동차정류장)결정 토지(자동차정류
장 1, 2)

연번	소재지 동 명	지 번 (위치)	지목	필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리관계			비고
						성명	주소	구분	관리자	관리자주소	
1	상암동	자동차 정류장 1		4,979	4,979	서울시					
2	상암동	자동차 정류장 2		4,451	4,451	서울시					
계				9,430	9,430						

구 고 시

◆ 성동구고시 제2006-6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지형도면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20(2006.9.21) 호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률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2286-5557) 및 기획재정국 지적과(☎ 2286-537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10월 19일
성 동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학 교	대 학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일대	516,486	증)132	516,618	1975. 5. 1	한양대학교

나. 지형도면 : 실음생략.

『시계획조례』 제68조에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성 북 구 청 장

◆ 성북구고시 제2006-95호

도시관리계획(정릉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40(2006.10.9) 호로 도시관리계획(정릉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도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 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가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가정	대로	3	58	25	간선도로	7,200(268)	정릉동 151-9천	정릉동 966-193대	일반 도로	-	1936.12.26	정릉로
가정	대로	3	187	26~44(28)	도시고속 도로	15,123(268)	정릉동 151-9천	정릉동 966-193대	자동차 전용도로	-	1991.7.4	내부 순환도로
가정	대로	3	198	25~30(25)	보조간선 도로	1,510(70)	정릉동 966-62천	정릉동 139-18도	일반 도로	-	1971.4.7	아리랑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가정	중로	1	387	20	보조간선 도로	980 (184)	정릉동 161-17대	정릉동 413-37대	일반 도로	-	1958.11.3	보국문로
가정	소로	1	11	10	집산도로	570 (77)	정릉동 966-1천	정릉동 506-84대	일반 도로	-	1976.9.24	
변경	소로	1	11	10~13 (13)	집산도로	570 (77)	정릉동 966-1천	정릉동 506-84대	일반 도로	-		폭원 일부확폭
가정	소로	2	134	8	집산도로	306 (88)	정릉동 169-18천	정릉동 160-1학	일반 도로	-	1969.1.18	
변경	소로	2	134	8~12 (12)	집산도로	306 (88)	정릉동 169-18천	정릉동 160-1학	일반 도로	-		폭원 일부확폭
신설	소로	2	1	9	집산도로	47	정릉동 164-53대	정릉동 980-3천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2	8	집산도로	137	정릉동 164-15대	정릉동 162-22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3	8	집산도로	404 (328)	정릉동 464-2대	정릉동 966-86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4	7.7~8.2	집산도로	146 (76)	정릉동 183-13대	정릉동 966-95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1	6	집산도로	38	정릉동 416-10대	정릉동 416-27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2	4	집산도로	90	정릉동 416-14대	정릉동 416-21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3	4	집산도로	61	정릉동 145-2대	정릉동 481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4	6.7~6.9	집산도로	57	정릉동 110-39대	정릉동 111-37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5	4	집산도로	35	정릉동 161-15대	정릉동 161-27대	일반 도로			

※ ()는 구역내 접도폭원, 연장임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정릉동 966-1천 일원	-	증)483	483	-	

2) 공간시설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교통광장	-	정릉동 164-76대일원	-	증)663	663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정릉동 112-47대일원	-	증)169	169		

3) 유통 및 공급시설

■ 수도시설(가압장) 결정(변경)조서(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수 도		정릉동 966-1천일원	570	-	570	1979.8.8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획지번호	면 적(m ²)	위 치
1	196	정릉동 413-12, 413-13
2	223	정릉동 413-14, 413-15
3	246	정릉동 413-16
4	513	정릉동 414-3, 414-4
5	588	정릉동 414-18, 414-29, 414-10, 414-28, 414-33
6	522	정릉동 414-6, 414-11, 164-2
7	254	정릉동 164-15, 164-16, 164-57, 164-58
8	421	정릉동 416-1, 416-2, 416-20, 420-7, 420-8, 420-9
9	439	정릉동 416-4, 416-5, 416-6, 416-7, 416-69
10	675	정릉동 416-8, 416-9, 416-10, 416-11, 416-12, 416-13, 416-64, 416-77
11	585	정릉동 966-3, 966-113, 966-203
12	766	정릉동 966-193
13	1,238	정릉동 465-1, 465-5, 466-2, 466-3, 466-4, 150-1, 150-3, 150-5, 150-6, 966-126
14	803	정릉동 161-17
15	697	정릉동 139-3, 139-42, 139-43, 139-58, 139-63
16	654	정릉동 139-55, 139-56, 139-57, 966-105, 966-107

나. 최대·최소개발규모 결정(변경)조서

구 분	최대개발규모
간선변, 전면부(20m이상)	1,500㎡이하
이면부(8m이하)	1,000㎡이하

-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릉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5.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성북구 도시개발과(☎ 920-3720) 및 지적과(☎ 920-323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토목치수과(☎ 901-6221) 및 건설관리과(☎ 901-620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10월 19일
강 북 구 청 장

◆ 강북구고시 제2006-6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 1.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2006-527(2006. 9.14)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미아6·7동 860-58~860-67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작성인가하고,

가. 사업개요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북구 미아6·7동 860-58~860-67간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미아6·7동 860-58~860-67간 도로확장공사
- 규 모 : 도로확장 - 폭 6m→12~15m, 연장 183m

○ 도시계획시설(도로)조서

규 모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폭원	연장			
중로	12~15m	183m	미아동 860-58	미아동 860-67	미아동 860-58~844-1구간 495m 중 183m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18호(2006. 4.6) 삼양사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6-25호(2006.4.20) 지형도면의 고시
- 나. 사업 시행자의 성명(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2-59)
-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

- 부터 2008. 12. 31일 까지
-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 마.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강북구 토목치수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
-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토목치수과(공사관련 ☎ 901-6221) 및 건설관리과(보상관련 ☎ 901-62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의 명칭 : 미아6.7동 860-58~860-67간 도로확장공사

사업 시행자 : 강북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60-1	도로	17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62-3	도로	116	116			서울특별시 강북구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64-3	도로	94	94			서울특별시 강북구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68-8	도로	67	67			서울특별시 강북구					
5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68-10	대	75	75		서울 중구 황학동 473	이덕희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성수2가지점)	중소기업 은행	근저당권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83-2	대	13	13		서울 강북구 미아동 683-3	윤덕만					
7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83-3	대	101	101		서울 강북구 미아동 683-3	윤덕만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삼양동지점)	주식회사 조흥은행	근저당권		
8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83-11	대	10	10		서울 강북구 미아동 683-3	윤덕만					
9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83-12	도로	18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84-15	대	122	122	지분 2분의1	서울 강북구 미아동 684-2	박수철					
					지분 2분의1	서울 강북구 미아동 684-2	박상호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84-16	대	11	11		서울 성북구 삼선동2가 161	정석영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85-12	도로	102	102			서울특별시 강북구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85-22	대	76	76		서울 용산구 서계동 252-73	유현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85-23	대	136	136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79-20	홍영자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85-24	대	106	106		서울 강북구 미아동 685-21	김길만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91-17	도로	83	83			서울특별시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91-39	도로	7	7			서울특별시 강 북 구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91-40	도로	9	9	지분 7분의3	서울 강북구 우이동 155-3	정은숙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
					지분 7분의2	서울 강북구 우이동 155-3	김재익					
					지분 7분의2	서울 강북구 우이동 155-3	김하나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91-41	대	102	102		서울 강북구 미아동 691-23	박명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삼양동지점)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근저당권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91-42	대	67	67		서울 강북구 미아동 691-23	박명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삼양동지점)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근저당권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91-43	대	78	78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792-1 상신빌라 가-104	박만태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정릉지점)	주식회사 한국외환 은행	근저당권 (채무자 박인태)		
22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93-1	대	47	47	지분 7분의3	서울 강북구 우이동 155-3	정은숙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
					지분 7분의2	서울 강북구 우이동 155-3	김재익					
					지분 7분의2	서울 강북구 우이동 155-3	김하나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95-10	대	14	14		서울 강북구 미아동 695-1	김창식					
24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95-11	대	50	50		서울 강북구 미아동 695-2	최경숙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미아동지점)	주식회사 조흥은행	근저당권		
								서울 강북구 수유동 383-6	강북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25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95-12	대	74	74		서울 강북구 미아동 695-1	김창식				
26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95-13	대	131	131		서울 강북구 미아동 695-2	최경숙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미아동지점)	주식회사 조흥은행	근저당권	
								서울 강북구 수유동 383-6	강북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27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97-8	도로	30	30			서울특별시 강북구				
28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860-328	하천	332	143			서울특별시				
29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860-329	하천	96	96			서울특별시 강북구				
3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880	도로	721	546			국(건설부)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의 명칭 : 미아6.7동 860-58~860-67간 도로확장공사

사업 시행자 : 강북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번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편입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68-1	건물(1층)	40		서울 중구 황학동 473	이덕희	서울 강북구 미아동 1266 돌산마을가110	김성훈	전세권	미아동 668-10 지상건물		
		건물(2층)	40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성수2가지점)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건물(지1층)	10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83-2, 683-3	건물(1층)	96		서울 강북구 미아동 683-3	윤덕만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4(삼양동지점)	주식회사 조흥은행	근저당권	이해 관계인은 미아동 683-3에 해당		
		가건물(1층)	11									
		건물(2층)	62									
		건물(2층, 보일러실)	16									
		건물(지1층)	89									

연번	소재지 지번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편입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84-3	건물(1층)	13		서울 성북구 삼선동2가 161	정석영				미아동 684-16 지상건물
		건물(2층)	12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84-2	건물(1층)	106	내제 1층 가호	서울 강북구 미아동 684-2	김정자				내제1·2층 별도등기, 미아동 684-15 지상건물
		건물(1층, 창고)	11							
		가건물(1층)	3	내제 2층 나호	서울 노원구 중계동 84-59	박수철				
		건물(2층)	107							
건물(옥탑)	3									
5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85-19	건물(1층)	36		서울 용산구 서계동 252-73	유현근				미아동 685-22 지상건물
		건물(2층)	36							
		건물(3층)	29							
		가건물(1층)	2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85-20	건물(1층)	106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79-20	홍영자				미아동 685-23 지상건물
		가건물(1층)	16							
		건물(2층)	106							
		건물(3층)	66							
		건물(지1층)	24							
7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85-21	건물(1층)	60		서울 강북구 미아동 685-21	김길만				미아동 685-24 지상건물
		건물(2층)	52							
		건물(지1층)	58							
8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95-1	건물(1층)	29		서울 강북구 미아동 695-1	김창식				미아동 695-12 지상건물
		건물(2층)	38							
		건물(3층)	38							
		건물 (2층 베란다)	3							
		건물 (3층 베란다)	3							
		건물(지층)	27							
		건물(옥탑)	7							

연번	소재지 지번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편입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9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95-2	건물(1층)	85	서울 강북구 미아동 695-2	최경숙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4(미아동지점)	주식회사 조흥은행	근저당권	미아동 695-13 지상건물	
		건물(2층)	95							
		건물(3층)	95							
		건물(4층)	11							
		가건물(4층)	5							
		가건물(4층)	5							
		건물(지1층)	82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91-25	건물(1층)	49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792-1 상신빌라 가-104	박만태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1 (정릉지점)	주식회사 한국의환은행	근저당권 (채무자 박인태)	미아동 691-43 지상건물	
		건물(2층)	49							
		건물(옥탑)	5							
		건물(지1층)	49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91-23	건물(1층)	55	서울 강북구 미아동 691-23	박명환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삼양동지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근저당권	미아동 691-41 지상건물	
		건물(2층)	54							
		건물(지1층)	8							
		가건물(1층)	7							
		건물(1층, 보일러실)	10							

◆ 노원구고시 제2006-43호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2005.1.31)
호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
특별시노원구 고시 제2005-16(2005.
3.4)호로 지형도면 승인고시, 서울특별
시노원구고시제2006-14호(2006.5.1)
로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실시계
획 인가고시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
2006-433(2006.9.8)호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공람공고된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산8-7번지일대 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제9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초안산
근린공원)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를 하고
자 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8-7번지 일대

나. 사업기간 : 2006. 3. ~ 2010. 12. 31.

다.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
(초안산근린공원)사업

라. 사업규모 : 950,643㎡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별 첨

사.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 별 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에
 아.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의함.

자. 사업개요

사업 시행지	사업의종류 및 사업 명칭	사업의 규모	사업기간	비 고
노원구 월계동 산8-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초안산근린공원)사업	○ 부지면적 : 950,643㎡ ○ 시설종류 : 휴양시설등 74개시설	2006. 3. ~2010.12.31.	

물 건 조 서

○ 사업명 : 초안산근린공원조성사업

제 2727 호
시
보
2006. 10. 19. (목)

연번	기 정									변 경									비고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면적 또는 수량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면적 또는 수량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내용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내용	
1	월계동 산8-7	배드민턴장	천막/ 파이프	2면	주민					좌동	배드민턴장(2층) (천막/파이프)	17.5m×17m	1식	신창 배드민턴 클럽 회장 기복도	도봉구 창3동 569-11				
											지붕덜개(천막)	상 동	1식						
											창고(시멘트)	4.3m×1.7m	1식						
											전기배전시설		1식						
											장의자	4인이상	7개						
											의자	1인용	20개						
											관람석 차양천막		1식						
											코트장용물통		1식						
											화단		5개						
											신평기		2개						
											테이블		1개						
											옷걸이	철제	3개						
											게시판		1식						
											쓰레기통	철제입식	1식						
											코트다짐롤러	철제	1대						

연번	기 정									변 경									비고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면적 또는 수량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면적 또는 수량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내용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내용	
1	월계동 산8-7	배드민턴장	천막/ 파이프	2면	주민					좌동	축대(2층)		1식	신창 배드민턴 클럽 회장 기복도	도봉구 청3동 569-11				
										배수시설(2층)		1식							
										코트장 연결계단	1층→2층	1식							
										배드민턴장(1층 (천막/파이프)	17m×16m	1식							
										지붕덮개(천막)	상 동	1식							
										가설물(1층)	철제/비닐	1식							
										집기함(1층)	지하	1식							
										철제 입간판	2.5m×1.6m	1식							
										간이화장실		1식							
										가설물	3m×9m×2.6m 철제/천막	1식							
										기타 집기 등		1식							
2	"	수목	아카시아 등	85주	정동일 외 2인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353				좌동	수목 (아카시아등)		85주	정동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353 여주동원A 106-1302				
														신명섭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0 동아A 102-302				
														백정엽	서울시 중구 주교동 102-2				

연번	기 정									변 경									비고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면적 또는 수량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면적 또는 수량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내용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내용	
3	월계동 산8-7	묘		12개						좌동	분묘		12기	미상					
4	"	묘 상석		4개						좌동	상석		2개	미상					
5										월계동 산8-7	석상		1개	미상					물건 추가
6	월계동 산8-2	배드민턴장	천막/ 파이프	4면	주민 (초현 배드민턴)					좌동	배드민턴장 (천막/파이프)	17m×27m	1식	초현 배드민턴 클럽 회장 박학규	도봉구 창3동 527-21				
										지붕덮개(천막)	상 동	1식							
										본부석 (목재/파이프)	6m×3m	1식							
										옷장	0.8m×1.8m	1식							
										테이블(앵글)	2.4m×0.6m	1식							
										테이블(앵글)	1.8m×0.6m	1식							
										관람용장의자	4인이상	4개							
										등의자	목재	2개							
										게시판	1m×2.2m	1식							
										사다리	7m	1개							
										쇼핑카트	철재	1대							
										옷걸이	철재	1식							

제 27227 호

시

부

2006. 10. 19. (목)

연번	기 정									변 경									비고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면적 또는 수량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면적 또는 수량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내용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내용	
6	월계동 산8-2	베드민 턴장	천막/ 파이 프	4면	주민 (초현 베드 민턴)					좌동	가설물 (철재/천막)	11m×4m	1식	초현 베드 민턴 클럽 회장 박학 규	도봉구 창3동 527-21				
											집기함(철재)		3식						
											손수레		1대						
											입간판(철재)	1.3m×2.1m	1식						
											간판	가로형	1식						
											허리돌리기	철재	1식						
											간이화장실		1식						
기타집기 등		1식																	
7									월계동 산8-2	집기함(초현 베드민턴장내)	지하	1식	초안생활 체조 연합회장 조영욱	도봉구 창3동 451-13					
										단상(철재)	1.5m×2m× 0.9m	1식							
8	월계동 산8-2	등의자	목재	7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9	"	매달리기	목재	1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10	"	윗몸일으키기	목재	2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11	"	허리돌리기	목재	3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12	"	오금펴기	목재	1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13	"	약수터	콘크리트	10㎡	주민					좌동	약수터(폐쇄)	콘크리트	10㎡	미상					

제 2727 호

시

물건
추가

부

물건
추가

2006. 10. 19. (목)

연번	기 정									변 경									비고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면적 또는 수량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면적 또는 수량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내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내용	
14	월계동 산8-2	수목	아카시아 등	132주	김창성 외 3인	성북구 종암동 8-177				좌동	수목 (아카시아등)		132주	김창성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3-1				
														김수정	상동				
														김주영	상동				
														김우영	상동				
15	"	망부석	돌	1개						좌동	망주석		4개	미상					
16	"	묘상석	돌	4개						좌동	상 석		5개	미상					
17	"	묘		7개						좌동	분묘		10기	미상					
18										월계동 산8-2	석상		4개	미상					물건 추가
19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배드민턴장	천막/ 파이프	4면	주민						변경	없음							
20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허리돌리기	목재	2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21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철봉	철주	1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22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평행봉	철주	1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23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의자	목재	3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제 2727 호

시

보

2006. 10. 19. (목)

연번	기 정								변 경								비고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면적 또는 수량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면적 또는 수량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내용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내용
24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가림막	천막/ 파이프	20㎡	노원구청						변경	없음							
25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묘	-	7개							변경	없음							
26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망부석	돌	3개							변경	없음							
27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석상	돌	2개							변경	없음							
28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묘 상석	돌	4개							변경	없음							
29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철조망	-	108M							변경	없음							
30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윗몸 일으키기	목재	3개							변경	없음							
31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매달리기	목재	1개							변경	없음							
32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허리돌리기	목재	1개							변경	없음							
33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오금펴기	목재	1개							변경	없음							

제 21227 호

시

보

2006. 10. 19. (목)

연번	기 정								변 경								비고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면적 또는 수량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면적 또는 수량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내용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내용
34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약수터	콘크리트	1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35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배드민턴장	-	2면	노원구청						변경	없음							
36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정자	목재	1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37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배수로	석축	2X63m	노원구청						변경	없음							
38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화장실	판별	2동	노원구청						변경	없음							
39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파고라	목재	3동	노원구청						변경	없음							
40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철봉	철재	2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41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평행봉	철주	1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42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등의자	목재	20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43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약수터	콘크리트	1㎡	노원구청						변경	없음							

제 2727 호

시

보

2006. 10. 19. (목)

연번	기 정								변 경								비고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면적 또는 수량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면적 또는 수량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관리 및 내용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관리 및 내용
44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팔굽혀펴기	철재	2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45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묘	-	3개							변경	없음							
46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수목	-	16.100주	조재우 외 6인	용산구 이촌동 302-86					변경	없음							
47	노원구 월계동 산68번지	정자	목재	1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48	노원구 월계동 산5번지	윗몸일으키 기	목재	1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49	노원구 월계동 산5번지	철봉	목재	1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50	노원구 월계동 산5번지	허리돌리기	목재	1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51	노원구 월계동 산5번지	의자	목재	9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52	노원구 월계동 산5번지	정자	목재	1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53	노원구 월계동 산5번지	평행봉	철재	2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54	노원구 월계동 산5번지	역기	철재	1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제 2727 호

시

보

2006. 10. 19. (목)

연번	기 정									변 경									비 고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내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내용	
1	월계동 산8-7	임야	3,305	3,305	정동일 외 2인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353	김은영 외 4인	광진구 구의동 80-393	근저당권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백정엽 (지분 3305/ 15669)	서울시 중구 주교동 102-2	김성수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 2-128	근저당권	이해 관계인 추가
														경남모직 주식회사	경남 마산시 봉암동 666	근저당권	"		
2	월계동 산8-2	임야	10,909	10,909	김창성 외 3인	성북구 종암동 8-177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김창성 (지분1/4)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3-1			주소 변경	
														김수정 (지분1/4)	상동				
														김주영 (지분1/4)	상동				
														김우영 (지분1/4)	상동				
3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임	4,463	4,463	최마이 클운	인천 남구 승의동 42-1			가등기					변경		없음			
4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임	55,537	55,537	조재우 외 6인	용산구 이촌동 302-86			가압류					변경		없음			
5	노원구 월계동 산68번지	임	31,491	90	조재우 외 6인	용산구 이촌동 302-86								변경		없음			
6	노원구 월계동 산5번지	임	237,139	445	김상균	용산구 이촌동 430								변경		없음			
7	노원구 월계동 산17-1번지	임	2,822	2,822	이인규 외 2인	종로구 홍파동 12-1								변경		없음			
8	노원구 월계동 916번지	전	201	201	이인규 외 2인	종로구 홍파동 12-1								변경		없음			

제 2727 호

시

부

2006. 10. 19. (목)

연번	기 정									변 경									비 고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내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내용	
9	노원구 월계동 916-4번지	전	202	202	이인규 외 2인	종로구 홍파동 12-1								변경		없음			
10	노원구 월계동 915-1번지	전	213	213	김기완	은평구 신사동 15-1								변경		없음			
11	노원구 월계동 915-9번지	전	96	96	김기완	은평구 신사동 15-1								변경		없음			
12	노원구 월계동 916-3번지	전	43	43	이인규 외 2인	종로구 홍파동 12-1								변경		없음			
13	노원구 월계동 916-5번지	전	16	16	이인규 외 2인	종로구 홍파동 12-1								변경		없음			
14	노원구 월계동 915-8번지	전	81	81	이이철	경기동 양주시 덕정동 31-1	최경애	도봉구 창동 299 상아 [Ⓐ] 2-916	근저당					변경		없음			
15	노원구 월계동 915-7번지	전	94	94	김기완	은평구 신사동 15-1								변경		없음			
16	노원구 월계동 915-6번지	전	96	96	김기완	은평구 신사동 15-1								변경		없음			
17	노원구 월계동 신3-1번지	임	8,835	8,835	태양극	강남구 역삼동 712-3								변경		없음			
18	노원구 월계동 749번지	전	2,508	2,508	이정숙 외 1인	강남구 역삼동 712-3								변경		없음			
19	노원구 월계동 750번지	대지	595	595	태성원	강남구 도곡동 527			가등기					변경		없음		노원구 월계동 750번지	

제 2727 호

시

보

2006. 10. 19. (목)

- ◆ 서대문구고시 제2006-95호
제1종지구단위계획(충정지구) 변경(획지 계획 : 공동, 단독개발)결정
1. 서울특별시고시제1998-79호(1998.3.13)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78호(2002.5.10)로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충정지구)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5항 및 제6항 동법률시행령제25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따라 이를 고시(경미한 변경)하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

률 제32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를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도시개발과, 지적과), 서울특별시(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대문구청장

- 가. 변경결정(경미한변경)사유
- 1) 획지선 변경 없이 공동, 단독개발 변경을 통한 공공복지(직장보육시설)건물건립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충정지구) 변경(공동개발)결정

-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에 관한 개별필지 조서

구 분	구 역 명	가 구 번호	위 치	면 적 (㎡)	획지계획(공동개발)		비 고
					기 정	변 경	
공동개발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충정지구)	-	미군동 31-9외 6필지	534.7	공동개발(규제) 미군동 27,31-9,10 미군동 31-7,8	공동개발(규제) 미군동 31-8,9,10,20 -면 적 : 290 ㎡	금회시행 (경찰청)
					공동개발(원장) 미군동 31,8,11,20	단독개발(규제) 27 : 95.9㎡ 31-7 : 49.6㎡ 31-11 : 99.2㎡	

다. 기타 지구단위계획변경 : 구역 및 면적 및 기타 변경되는 사항 없음

라. 관계도서 : 생략(서대문구청 도시개발과 비치도면과 같음)

◆ 양천구고시 제2006-3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실시 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05-20호로 실시계획인가된 양천구 신정3동 1294번지 3호지상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인

가하고, 동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건축과 (☎ 2650-339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10월 19일
양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3동 1294번지 3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
 - 명 칭 : 15kV 신정변전소 신축공사
- 다. 사업시행 규모
- 사업 부지면적 : 2,203.6㎡

- 건축규모 : 지하3층, 지상1층, 연면적 3,956.84㎡
- 건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 마. 사업기간 : 2005.04.~2007.12.31
- 바. 사용 및 수용할 토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3동 1294번지 3호

- 조합 조합장 허준
-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5동 11-1외2
- 마. 준공인가내역
 - 대 지 면 적 : 1,770.9㎡
 - 규모 및 용도
 - 지하1층, 지상9층, 아파트 1개동 3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연면적 : 4686.32㎡
- 바. 사업시행기간 : 2004.1~2006.10

◆ 양천구고시 제2006-39호

- 성산연립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 11-1호 성산연립주택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같은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도시주택과에서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6년 10월 19일
양 천 구 청 장

-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재건축사업
- 나. 정비사업의 명칭 : 성산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다.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 서울시 양천구 신월5동 11-1외 2필지 (예정지번 : 1038)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성산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서구고시 제2006-81호

-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승인
1.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98-20호('98.4.24)로 결정된 화곡동424-9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강 서 구 청 장

- 가. 변경결정의 취지 : 주택 밀집지역이며 그린파킹 사업만으로는 주차난 해결이 어려운 여건의 지역으로 기존 평면식 주차장을 입체형 자주식 주차장으로 건설하여 이용 주민의 편익증진 및 주차난을 해소고자 변경 결정함.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주차장	강서구 화곡1동 424-94번지 일대	889.8	증)283.3	1,173.1	'98.4.24	

- 다. 관계도면 : 강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2600-6843) 비치도면과 같음.

◆ 금천구고시 제2006-3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구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

거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금 천 구 청 장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1	서울주택 2002-0130	미송건설 (주)	독산동 332-18번지	표소연	○ 사무실무단이전 및 기술자미보유	영업정지 6개월 (2006.10.20-2007.4.17)	주택법제13조 주택법 시행령제14조제1항

◆ 영등포구고시 제2006-51호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실시 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72호(1977.8.9)호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26호(1985.6.27)호로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 시행허가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16호(1992.4.14)로 도시계획사업 시행변경 허가된 우리구 당산동2가 30-2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률시행령 제9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

획시설사업(유통업무설비)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영등포구 도시관리과(☎ 2670-3661~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10월 19일
영 등 포 구 청 장

-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 (유통업무설비)
- 나. 사업시행지 : 영등포구 당산동2가 30-2 일대
- 다. 사업시행자 :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5동902호 이석준

라. 사업시행 규모 : 변경없음

- 1)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비 고
	계	1차부지	2차부지	
계	27,958.0	21,754.0	6,204.0	
도매시장	12,309.0	10,045.8	2,263.2	
주차장	2,445.0	1,534.8	910.2	
화물적치장	2,713.5	2,713.5	-	
녹지	3,025.0	1,818.0	1,207.0	
도로	6,405.7	4,582.1	1,823.6	
기타	1,059.8	1,059.8	-	

2) 사업시행 면적(총 건물연면적) : 변경없음

구 분	사업시행 면적(m ²)			비고
	계	1차사업	2차사업	
총 건물연면적	94,468.00	75,515.50	18,952.50	
용도별 면 적	판매시설	48,663.00	39,901.49	8,761.51
	업무시설	14,680.00	10,046.78	4,633.22
	편의시설	31,125.00	9,384.41	5,557.77
	주차장·기타		16,182.82	

- 마. 사업시행 기간 : 변경
 - 변경전 : 1985.6.27~1993.12.31
 - 변경후 : 1985.6.27~2006.12.31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변경없음.

◆ 동작구고시 제2006-7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동작구 고시 제2006-64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 “백운고개생태육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률 제91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환경녹지과(02-820-984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10월 19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

- “백운고개 생태육교 조성사업”
 - 사업시행지
 - 당 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31-1
 - 변 경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31-46
 - 변경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사업시행지 지번 변경
 - 사업규모(변경없음) : 생태육교(L20×B15) 1개소
 - 면 적(변경없음) : 270m²
 - 결정고시 : 건설부고시 제187호(1962. 12. 20)
- 나.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다.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07. 12. 31까지
-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 붙임
- 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해당없음
- 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동작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노량진동 47-2)

사업의 명칭 : 백운고개 생태육교 조성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 제 이용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1	사당동 산31-46	임	270	270	임야	용산구 서계동 100	한자영		

◆ 동작구고시 제2006-73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실시계획
변경인가

1. 동작구 고시 제2006-65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 “서달산~중앙대간 생태육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률 제91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환경녹지과(02-820-984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10월 19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
“서달산~중앙대간 생태육교 조성사업”
- 사업시행지
 - 당 초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산59
 - 변 경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산59-2

- 변경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사업시행
지 지번 변경

- 사업규모(변경없음) : 생태육교(L22m×B16m) 1개소
- 면 적(변경없음) : 511㎡
- 결정고시 : 건설부고시 제187호(1962. 12. 20)

나.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다.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07. 12. 31까지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해당없음

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동작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노량진동 47-2)

사업의 명칭 : 서달산~중앙대간 생태육교 조성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 제 이용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1	후석동 산59-2	임	511	511	임야	중구 을지로3가 302-1	학교법인을지학원		

◆ 동작구고시 제2006-74호

주택재건축사업변경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중전 : 주택
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
택재건축사업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28조
제3항(중전 : 주택건설촉진법33조 1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중전 : 주택건
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나. 사업변경내용

구분	규 모			대지 면적 (㎡)	건축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조정 면적 (㎡)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사용검사 예정일)	기타
	층 수 (지하/지상)	동	세대수								
변경전	2/13	2	123	5,195.20	17,921.05	33.06	247.21	844.71	35,482.989천원	2005.11	-
변경후	2/13	2	123	5,195.20	17,921.05	33.06	247.21	844.71	35,482.989천원	2006.10	-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2003.10.~2005.11.30

변경 2003.10.~2006.10.31

6. 사업계획변경승인도면 : 생략(동작구청 주
택과에 비치 ☎ : 820-9776)

◆ 동작구고시 제2006-75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주차장, 도
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06-62호
(2006.9.21)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2006년 10월 19일

동 작 구 청 장

1. 사 업 명 : 일신·성도연립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주체(사업시행자)

가. 일신·성도연립재건축조합 조합장

도종록(동작구 상도3동 286-1호)

나. 갑을건설(주) 대표 박한상

(용산구 갈월동 2-5호)

3. 사업위치, 면적 및 규모(변경내용)

가. 사업위치 : 동작구 상도3동 286-1호

외 4필지

주차장,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06-524
(2006.9.28)호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상도4동 244-183번지의 18
필지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
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
가를 위해 같은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
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같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환경녹지과(☎ 820-1395 담당 김근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10월 19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공지, 주차장, 도로)
- 사업의명칭 :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상도4동 244-183번지의외 18필지
- 면 적 : 3,781㎡

- 결정고시 : 동작구 고시 제2006-62호 (2006. 9. 21)
-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다.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년
-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 붙임
- 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따로붙임
- 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토 지 조 서

○ 소재지 : 동작구 상도4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소유자이외의 권리 및 내용		
1	244-183	대	665	55.132/ 665	강남구 대치동 972 로얄타운 306호	임정은					
				55.132/ 665	동작구 노량진동 325 신동아 리버파크 706-2610	박정열	중구 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장지동)	근저당권설정		
				55.7/ 665	노원구 상계동 639 보람A 207-501	이일국	중구 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장지동)	근저당권설정		
				55.701/ 665	강남구 압구정동 484 한양A 62-1201	손병대					
				55.132/ 665	동대문구 회경동 106 신성A 103-202	하필숙					
				55.13/ 665	강남구 개포동 189 주공A 436-406	권용복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국민은행 (도곡동)	근저당권설정		
				55.7/ 665	관악구 신림동 1716 청광A 606	이현승					
				55.701/ 665	마포구 염리동 128-7	이덕주					
				55.132/ 665	도봉구 쌍문동 54 현대A 102-303	하중훈	중구 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장지동)	근저당권설정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소유자이외의 권리 및 내용	
1	244-183	대	665	55.132/ 665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2 아름마을A 104-903	박형태				
				55.7/ 665	구로구 구로동 685-70 현대연예인A 201-504	엄부흠				
				55.701/ 665	서대문구 홍제동 459 홍제원 현대A 101-801	안은정				
2	244-110	도	248	248	서대문구 대신동 126-12	정주호				
3	244-182	대	423	84.883/ 423	마포구 중동 40 -12 성산2차 현대A 203-1104	김선일				
				63.127/ 423	마포구 성산동 450 시영A 22-504	최광석				
				63.508/ 423	마포구 성산동 30-25 주영아트빌 비-201	손태분				
				84.847/ 423	마포구 중동 395 동원월드타운A 102-1603	이선미				
				63.127/ 423	마포구 상암동 상암 택지개발 사업지구 3-6블럭 상암월드컵 파크6단지 614-403	정봉자				
				63.508/ 423	동작구 상도동 244-182 정경연립 207	김호묵	상도동 209-17	상도4동 새마을금고	근저당권설정	
4	244-69	대	159	26.5/ 159	상도동 279-427 성분빌라 401호	방영자				
				26.5/ 159	노원구 월계동 13 아파트 29-202	송선옥				
				26.5/ 159	동작구 노량진동 227-5 노량진 맨션A 309호	강현수				
				26.5/ 159	구로구 구로동 108 현대파크빌 2304	최우석				
				26.5/ 159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019	김중환				
				26.5/ 159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삼성A 104-104	박정훈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소유자이외의 권리 및 내용	
5	244-359	대	158	26.34/ 158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영 그린타운 503-304	김예진				
				26.34/ 158	노원구 상계동 1294 불암현대A 106-1511	차경순				
				26.33/ 158	동작구 노랑진동 315-106	안영임				
				26.33/ 158	동작구 상도동 197-1	성청옥				
				26.33/ 158	관악구 신림동 472-31	김하진				
				26.33/ 158	서초구 방배동 872-16 201호	정영옥				
6	244-363	대	171	29.32/ 171	구로구 구로동 136-81	이현수				
				27.44/ 171	강동구 성내동 295 성안마을 청구A 102-1606	김상욱				
				29.5/ 171	동작구 대방동 502 현대A 105-1704	강영욱				
				27.61/ 171	동작구 상도동 244-363 효성빌라 나 -102	장정옥				
				29.5/ 171	은평구 갈현동 355-95 동익파크A 1-809	김상연				
				27.61/ 171	동작구 상도동 56-34 럭키빌라 403호	장동월				
동작구 상도동 56-34 럭키빌라 403호	정옥순									
7	244-50	대	272	26.99/ 272	동작구 상도동 244-50 효성빌라 가동 비01호	신건화				
				28.68/ 272	강서구 등촌동 630-3 우성A 102-1201	박지영				
				26.99/ 272	동작구 상도동 244-50 101호	하영애				
					동작구 상도동 244-50 101호	김병주				
					동작구 상도동 244-50 101호	김민희				
동작구 상도동 244-50 101호	김병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소유자이외의 권리 및 내용	
7	244-50	대	272	27.66/ 272	동작구 상도동 412 상도현대A 102-701	김은경				
				26.99/ 272	송파구 문정동 15 문정동아A 101-101	홍정희				
				28.68/ 272	양천구 신정동 87-39 유원목동A 101-1501	오정윤				
				26.99/ 272	서초구 잠원동 58-16 신반포10차A 315-911	손금희				
				28.68/ 272	중랑구 중화동 291-16	이찬희				
				24.32/ 272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313-42	황의춘				
				26.02/ 272	성북구 돈암동 609-1 한진A 206-506	이태제				
8	244-72	대	162	162	동작구 상도동 244-72	박종욱		국가보훈처	근저당권설정	
9	244-118	대	179	179	동작구 상도동 244-118	변재현				
10	244-117	대	99	99	동작구 상도동 244-117	유진				
11	244-36	대	132	132	강북구 수유동 605-415 2호	이옥빈				
12	244-73	대	182	182	동작구 상도동244-73	조병성				
13	244-85	대	179	179	영등포구 여의도동 30-3 삼부A 1-23	이완		동작구세무과	압류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국민은행 (화곡동)	근저당권설정	
14	244-84	대	165	165	동작구 상도동 253-3	강성애				
15	244-83	대	165	165	동작구 상도동 244-83	김영자				
16	244-361	대	142	142	동작구 상도동 244-361	임종태	상도동 324-19	상도2,3동 새마을금고	근저당권설정	
17	244-181	대	106	106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A 335-308	이원술				
18	244-180	도로	60	60	서대문구 대신동 126-12	정주호				
19	244-81	도로	294	114	은평구 신사2동 237-403	함승기				
					동작구 본동 492 삼성래미안A 101-1501	김용달				
					동작구 상도동 431 래미안 상도3차A 303-402	이지은				

건 물 조 서

○ 소재지 : 동작구 상도4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소유자 ^외 의 관리 및 내용	
1	244-183	101	지하	철근 콘크리트	8.82	강남구 대치동 972 로얄타운 306	임정은				
			1층	철근 콘크리트	52.29						
		102	지하	철근 콘크리트	8.82	동작구 노량진동 325 신동아 리버파크 706-2610	박정열	중구 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장지동)	근저당권 설정	
			1층	철근 콘크리트	52.29						
		103	지하	철근 콘크리트	8.82	노원구 상계동 639 보람 [Ⓐ] 207-501	이일국	중구 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장지동)	근저당권 설정	
			1층	철근 콘크리트	52.92						
		105	지하	철근 콘크리트	8.82	강남구 압구정동 484 한양 [Ⓐ] 62-1201	손병대				
			1층	철근 콘크리트	52.92						
		201	지하	철근 콘크리트	8.82	동대문구 휘경동 106 신성 [Ⓐ] 103-202	하필숙				
			1층	철근 콘크리트	52.29						
		202	지하	철근 콘크리트	8.82	강남구 개포동 189 주공 [Ⓐ] 436-406	권용복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국민은행 (도곡동)	근저당권 설정	
			1층	철근 콘크리트	52.29						
		203	지하	철근 콘크리트	8.82	관악구 심림동 1716 청광 [Ⓐ] -606	이현승				
			1층	철근 콘크리트	52.92						
205	지하	철근 콘크리트	8.82	마포구 염리동 128-7	이덕주						
	1층	철근 콘크리트	52.92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소유자이외의 관리 및 내용		
1	244-183	301	지하	철근 콘크리트	8.82	도봉구 쌍문동 54 현대A 102-303	하중훈	중구 을지로 1가 101-1	하나은행 (장지동)	근저당권 설정		
			1층	철근 콘크리트	52.29							
		302	지하	철근 콘크리트	8.82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2 아름마을A 104-903	박형태					
			1층	철근 콘크리트	52.29							
		303	지하	철근 콘크리트	8.82	구로구 구로동 685-70 현대연예인A 201-504	엄부흠					
			1층	철근 콘크리트	52.92							
		305	지하	철근 콘크리트	8.82	서대문구 홍제동 459 홍제원현대A 101-801	안은정					
			1층	철근 콘크리트	52.92							
2	244-182	101	지하	연와조	28.2	마포구 중동 40-12 성산2차 현대A 203-1104	김선일					
			1층	연와조	69.81							
		102	지하	연와조	24.51	마포구 성산동 450 시영A 22-504	최광석					
			1층	연와조	48.39							
		103	지하	연와조	23.25	마포구 성산동 30-25 주영아트빌 비-201	손태분					
			1층	연와조	50.1							
		205	지하	연와조	28.7	마포구 중동 395 동원월드타운A 102-1603	이선미					
			1층	연와조	69.81							
		206	지하	연와조	24.51	마포구 상암동 상암 택지개발사업지구 3-6 블럭 상암 월드컵파크 6단지 614-403	정봉자					
			1층	연와조	48.39							
		207	지하	연와조	23.25	동작구 상도동 244-182 정경연립 207	김호목	상도동 209-17	상도4동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설정		
			1층	연와조	50.1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소유자이외의 관리 및 내용	
3	244-69	지층 101	지층	연와조	39.36	동작구 상도동 279-427 성문빌라 401	방영자				
		지층 102	지층	연와조	39.36	노원구 월계동 13 아파트 29-202	송선옥				
		201	1층	연와조	39.36	동작구 노량진동 227-5 노량진 맨션㉠ 309	강현수				
		202	1층	연와조	39.36	구로구 구로동 108 현대파크빌 2304	최우석				
		301	2층	연와조	39.36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019	김중환				
		302	2층	연와조	39.36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삼성㉠ 104-104	박정훈				
4	244-359	지층 101	지1층	연와조	39.36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영그린타운 503-304	김예진				
		지층 102	지2층	연와조	39.36	노원구 상계동 1294 불암현대㉠ 106-1511	차경순				
		201	1층	연와조	39.36	동작구 노량진동 315-106	안영임				
		202	1층	연와조	39.36	동작구 상도동 197-1	성청옥				
		301	2층	연와조	39.36	관악구 신림동 472-31	김하진				
		302	2층	연와조	39.36	서초구 방배동 872-16 201호	정영옥				
5	244-363	지층 1호	지1층	철근 콘크리트	40	구로구 구로동 136-81	이현수				
		지층 2호	지1층	철근 콘크리트	37.43	강동구 성내동 295 성안마을 청구㉠ 102-1606	김상욱				
		101	1층	철근 콘크리트	40.24	동작구 대방동 502 현대㉠ 105-1704	강영욱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소유자이외의 관리 및 내용	
5	244-363	102	1층	철근 콘크리트	37.67	동작구 상도동 244-363 효성빌라 나-102	장정옥				
		201	2층	철근 콘크리트	40.24	은평구 갈현동 355-95 동익파크A 1-809	김상연				
		202	2층	철근 콘크리트	37.67	동작구 상도동 56-34 럭키빌라 403 동작구 상도동 56-34 럭키빌라 403	장동월 정옥순				
6	244-50	지층 1호	지1층	철근 콘크리트	56.95	동작구 상도동 244-50 효성빌라 가동 비01호	신건화				
		지층 2호	지1층	철근 콘크리트	60.55	강서구 등촌동 630-3 우성A 102-1201	박지영				
		101	1층	철근 콘크리트	56.95	동작구 상도동 244-50 101	하영애				
						동작구 상도동 244-50 101	김병주				
						동작구 상도동 244-50 101	김민희				
						동작구 상도동 244-50 101	김병경				
		102	1층	철근 콘크리트	58.38	동작구 상도동 412 상도현대A 102-701	김은경				
		201	2층	철근 콘크리트	59.95	송파구 문정동 15 문정동A 101-101	홍정희				
		202	2층	철근 콘크리트	60.55	양천구 신정동 87-9 유원목동A 101-1501	오정윤				
301	3층	철근 콘크리트	56.95	서초구 잠원동 58-16 신반포10차A 315-911	손금희						
302	3층	철근 콘크리트	60.55	중량구 중화동 291-16	이찬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소유자이외의 관리 및 내용	
6	244-50	501	4층	철근 콘크리트	51.33	광명시 소하동 313-42	황의춘				
		502	4층	철근 콘크리트	54.92	성북구 돈암동 609-1 한진④ 206-506	이태제				
7	244-72	1층		연와조	62.28	동작구 상도동 244-72	박종욱	국가 보훈처	근저당권 설정		
		2층		연와조	42.28						
		창고			1식						
		화단			1식						
		수목			16주						
		대문			1식						
8	244-118	지층차고		연와조	19.8	동작구 상도동 244-118	변재현				
		지1층		연와조	37.51						
		1층		연와조	57.31						
		2층		연와조	57.31						
		수목			2주						
		화단			1식						
		셔터			1식						
		간판			1식						
		대문			1식						
9	244-117	지1층대피소		연와조	8.37	동작구 상도동 244-117	유진				
		지1층		연와조	36.57						
		1층		연와조	44.94						
		2층		연와조	42.18						
		대문			1식						
10	244-36	지1층		연와조	27.9	강북구 수유동 605-415 2호	이옥빈				
		1층		연와조	62.85						
		2층		연와조	65.1						
		옥탑 (물탱크실)		연와조	8.68- 연면적 제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소유자이외의 관리 및 내용		
10	244-36	창고		1식	강북구 수유동 605-415 2호	이옥빈					
		대문		1식							
11	244-73	지1층대피소	철근 콘크리트	25.52	동작구 상도동 244-73	조병성					
		1층	철근 콘크리트	68.76							
		2층	철근 콘크리트	103.56							
		3층	연와조	104.82							
		옥탑 (계단실)	연와조	6.82 연면적 제외							
		대문		1식							
12	244-85	1층	연와조	66.12	영등포구 여의도동 30-3 삼부 [㉠] 1-23	이완		동작구 세무과	압류		
		2층	연와조	49.89							
		화단		1식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국민은행 (화곡동)	근저당권 설정	
		수목		21주							
		대문		1식							
13	244-84	지1층	연와조	79.44	동작구 상도동 253-3	강성애					
		지2층(차고)	연와조	51							
		1층	연와조	79.44							
		2층	연와조	79.44							
		대문		1식							
14	244-83	지1층	벽돌조	79.32	동작구 상도동 244-83	김영자					
		지2층	주차장	벽돌조			32.13				
			창고	벽돌조			7.92				
		1층	벽돌조	79.32							
		2층	벽돌조	79.32							
		수목		1주							
		대문		1식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자 이외의 관리 및 내용	
15	244-361	지1층	연와조	67.05	동작구 상도동 244-361	임종태	상도동 324-19	상도 2,3동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설정	
		지2층(차고)	연와조	39.99						
		1층	연와조	67.05						
		2층	연와조	67.05						
		수목		2주						
		대문		1식						
16	244-181	지1층	연와조	51.21	서초구 반포동 1-8 경남A 7-1005	윤혜선				
		지2층(차고)	연와조	28.8						
		1층	연와조	51.21						
		2층	연와조	51.21						
		화단		1식						
		수목		5주						
		대문		1식						

이 전 비 조 서

○ 소재지 : 동작구 상도4동

연번	소재지 지번	업소명	업종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상도동 244-118	한아름	소매업	동작구 상도동 244-118	변재현	

◆ 송파구고시 제2006-46호
 잠실아파트지구개발 지형도면(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272호(2000.9.25)로 고시된 잠실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공공청사 부지형태 변경에 대한 송파구 고

시 제2005-29호(2005.5.31)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송 파 구 청 장

1. 지구개발계획 명칭.위치 면적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잠실저밀도아파트지구	송파구 잠실동 일대	2,074,940.00	2,074,940.00	변경없음

2. 지구개발기본계획의 변경내용

○ 잠실1주구(잠실동19번지아파트)

〈공공청사〉

구 분	내 용	비 고
변 경 개 요	토지 형태변경(면적변경 없음)	
변 경 사 유	공공청사(동청사, 우체국, 파출소)의 부지형태 변경	

○ 잠실3주구(잠실4단지)

〈공공청사 및 근린공원〉

구 분	내 용	비 고
변 경 개 요	토지 형태변경(면적변경 없음)	
변 경 사 유	공공청사(소방파출소, 동사무소)의 부지형태 변경	

3. 관계도서 : 생략(송파구 지역개발과 비치
도서와 같음)

◆ 송파구고시 제2006-47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
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폐기물처리시설·환기구)
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송 파 구 청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주변도로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74	25~55	보조간선도로	1,960	문정동 150-14	장지동 233-10	일반도로	서고72 (06. 5.11)	가각부 변 경
변경	대로	1	74	25~55	보조간선도로	1,960	문정동 150-14	장지동 233-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11	20	집산도로	338	장지동 769-1	장지동 715-1	일반도로	서고72 (06. 5.11)	선형 일부변경
변경	중로	1	411	20	집산도로	351	장지동 769-1	장지동 715-1	일반도로		

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폐기물 처리시설	중간 처리시설	송파구 장지동 233-5 일대	35,550	증)1,496	37,046	서고 148호 (96.6.3)	

다.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조서

구분	노선명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분당선	고속철도	환기구	송파구 장지동 233-7일대	747	증)266	1,013	서고 271호(94.8.11)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정비과(☎ 410-3385)에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구 공 고

◆ 용산구공고 제2006-460호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교통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
설명회 개최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환경·교통영향평가서(초안)을 환경·교
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 동법 시
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6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를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용 산 구 청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사 업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70일대
- 연 면 적 : 47,103.2㎡
- 사업시행자 : 국제빌딩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2.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06. 10. 16~2006. 11. 7 (20일간)[평일 09:30~17:30]
- 공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 710-3385)
한강로제2동사무소(☎ 795-2927)
한강로제3동사무소(☎ 795-2925)

3.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06년 10월 24일(화) 10:30
- 장 소 : 용산구민회관
- 내 용 : 국제빌딩 제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따른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06. 11. 7한 (공람기간 만료일)
- 제 출 처 : 공람장소(용산구청 도시정비과, 한강로제2,3동사무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의견 기재 제출
- 제출내용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저감 방안 등의 의견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 필요성 여부 등]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도시정비과(☎ 710-3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동구공고 제2006-650호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 제안에 따른 공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32호(2005. 11.3)로 고시된 성동구 금호제2가동 200번지 일대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당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 제안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6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와 조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주택재개발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 제안안에 대하여 주민은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06년 10월 19일
성 동 구 청 장
- 가. 공람기간 : 2006.10.12~2006.10.26
(15일간)
-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 다. 공람내용
1. 주택재개발구역지정조서

10번지(본관 11층)
주택과(전화 2286-5591~6)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2가동 494(201호)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화 2236-5242)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성동구 금호2가동 200번지 일대	58,350㎡	변경 없음.

2. 정비계획(변경)수립

가) 토지이용(변경)계획

구분	명 칭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비 율(%)	
합 계		58,350.00	-	58,350.00	100.00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10,650.89	증)2,169.90	12,820.79	21.97	
	도 로	3,636.89	증)14.36	3,651.25	6.26	구적오차
	공 원	7,014.00	증)2,155.54	9,169.54	15.71	
택 지	소 계	47,699.11	감)2,169.90	45,529.21	78.03	
	택지 (1)	40,755.20	감)1,980.64	38,774.56	66.45	분양주택
	택지 (2)	4,750.00	감)189.26	4,560.74	7.82	임대주택
	택지 (3)	2,193.91	-	2,193.91	3.76	교회

나) 정비기반시설 정비(변경)계획

(1) 도로계획 : 변경없음.

(2) 공원(기존공원 조합원이 매입하여 공원 조성하여 기부채납)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응봉 공원	근린 공원	금호동2가 산9-1, 136, 35번지 일대	571.137 (7,014.00)	증)783.31	571,920.31 (7,797.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고시(05.11.03) 제2005-332호 •()는 구역내 공원시설 면적 •공원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공원 : 6,194 ㎡ - 신규조성 : 1,603.31 ㎡
신설	공원	소공원	금호동2가 411번지 일대	-	증)1,372.23	1,372.23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원 신설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변경)계획

(1) 건축물의 개량의 계획 : 변경 없음

(2) 건축물의 정비(변경)계획

구 분	면 적 (㎡)			건폐율 (%)	용 적 륜 (%)		층 수
	사업면적	계획대지	정비기반시설		개발가능용적률	건축물용적률	
기정	56,156.09	계 45,505.20 •분양: 40,755.20 •임대: 4,750.00	•공원: 7,014.00 •도로: 3,636.89	24.84	201.86	199.18	15층 이하
변경	56,156.09	계 43,335.30 •분양: 38,774.56 •임대: 4,560.74	•공원: 9,169.54 •도로: 3,651.25	26.44	243.76	239.71	평균 16층 이하

(3) 건축물의 건립평형

평 형		기 정		변 경	
		세대수(세대)	평형비율(%)	세대수(세대)	평형비율(%)
임 대	14평형	-	-	200	17.08
	15평형	189	17.15	-	-
조 합	23평형	-	-	566	48.34
	24평형	756	68.60	-	-
	33평형	107	9.71	332	28.35
	43평형	50	4.54	-	-
	45평형	-	-	73	6.23
합 계		1,102	100.00	1,171	100.00

(4)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3. 도시관리(변경)계획 등

(1)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58,350	-	58,350	100.00	공원선형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7,014	증)2,155.54	9,169.54	15.71	
제2종일반주거지역	51,336	감)2,155.54	49,180.46	84.29	

(2) 기타 사항 : 변경 없음.
 라. 관계도서 :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같음.
 다만, 본 제안은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서 결정함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

◆ 중랑구공고 제2006-614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열람

1.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된 망우동 338-1~270-1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을 시행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같음합니다.
 3. 본 열람공고내용에 대한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토목과(전화 : 490-3405 ~9, 전송 490-3708, <http://www.chungnang.seoul.kr>)에 의견제출 및 문의바랍니다.

2006년 10월 19일
 중 랑 구 청 장

가. 열람장소 : 중랑구청 건설교통국 토목과
 나. 열람기간 : 2006. 10. 19~2006. 11. 07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내용

사업위치	사업종류, 도로 종류 및 명칭	사업 규모	사업기간	결정고지 일 자	지적고지 일 자	사 업 시행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338의1~270-1간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일반도로	B = 6m L = 290m	인가일로부터 2007.12.31	중고 제50호 (01.06.14)	중고 제50호 (01.06.14)	중 랑 구청장

라.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99조에 의함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

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2조 5호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망우동 338-1~270-1간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내 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망우동 산4-7	임야	793	14*16/22	재단법인기독교 대한감리회유지재단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4-8				
				14*6/22	전금산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121-12				
2	신내동 376-6	전	392	392	윤부영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76-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	신내동 376-4	전	2	2*1/4	윤부영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76-3				
				2*1/4	진팔순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76-3				
				2*1/4	윤종우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76-3				
				2*1/4	윤종진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76-3				
4	망우동 산11-4	입야	729	729*20562/ 27174	정광섭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07	동부농업 협동조합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15-9	근저당	
				729*6612/ 27174	정규홍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07				
5	망우동 307-6	전	92	92	정광섭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07				
6	망우동 307-7	전	51	51	정광섭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07				
7	망우동 306-9	대지	25	25	정광섭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07				
8	망우동 306-11	전	89	89*367.33/ 866.88	김한준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06-5				
				89*367.32/ 866.88	김동복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06-5				
				89*132.23/ 866.88	강병인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68-4				
9	망우동 306-10	전	131	131	서철수	대구시 서구 평리동 595-12				
10	신내동 377-7	대	11	11*1/4	윤부영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76-3				
				11*1/4	진팔순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76-3				
				11*1/4	윤종우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76-3				
				11*1/4	윤종진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76-3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망우동 338-1~270-1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지 번	물건의 종 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의 권리명세	
1	망우동 306-5	건물	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30.88	김한준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06-5				
		감나무		2주						
		꽃사과나무		3주	김동복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06-5				
		사철나무		3주						
		자두나무		1주	강병인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68-4				
		단풍나무		5주						
		라일락		1주						
		화양목		1주						
2	망우동 산11-5	건물	블록구조 경량판별경사지붕	1	정광섭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산11-1				
		화장실		2						
		창고		5						
3	망우동 307-1	주목		1주	정광섭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산11-1				
		배나무		3주						
4	망우동 산11-4	배나무		17주	정규홍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07				
5	망우동 376-6	철조망		1식	윤부영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76-3				

◆ 강북구공고 제2006-59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1. 건설부고시 제33호('69.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5-58호(2005.10.27)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한 "한신대~화계사간 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 2006-57호(2006.8.21)로 도시

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되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에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2. 건물·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토목치수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익일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

는 의견서를 열람 기간 내에 열람장소
(강북구청 토목치수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19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구분	사업시행지	사업종류 및 명칭	규 모	결정 및 변경 결정 고시	지적승인	비 고
당초	수유5동 630-9~ 수유1동 491-28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한신대~화계사간 도로확장공사	B=10m L=370m	건설부고시 제33호 (‘69.01.18)	건설부고시 제33호 (‘69.01.18)	현황도로와 도시계획시설 (도로)불일치에 따른 도로선형변경
변경	" (일부 선형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강북구고시 제2006-57호 (2006.08.21)	강북구고시 제2006-57호 (2006.08.21)	

나.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
별시 강북구청장(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92-59)

다. 사업기간 :

당초 2005.10.27~2007.10.26

변경 2005.10.27~2007.12.31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

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
권외의 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 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변동사항 따로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 변동사항 따로
붙임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강북구청 토목치수과에 비치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토목치수
과(전화 901-622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사업의 명칭 : 한신대~화계사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사업 시행자 : 강북구청장

제 2727 호

시

보

2006. 10. 19. (목)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1	수유동 460-5	대	26	26		성동구 용답동 41-2	민성기	강서구 화곡동 847-21	이정휴	근저당	수유동 460-5	대	26	0		성동구 용답동 41-2	민성기				도시계획 시설변경	
								서초구 방배동 758-4 삼호A 5-403	강성인	가압류												
									성동 세무서	압류												
									성동구	압류												
									서울 특별시 교육감	압류												
									동대문구	압류												
									강북구	압류												
									동작구	압류												
2	수유동 460-6	대	8	8		성북구 장위동 46-40	최천열				수유동 460-6	대	8	0		성북구 장위동 46-40	최천열				도시계획 시설변경	
3	수유동 492-1	전	3	3		강북구 수유동 산129	한국신학 대학				수유동 492-1	전	3	3		강북구 수유동 산129	한국신학 대학				변경없음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의 내용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용
4	수유동 499-2	대	188	88		중구 충무로 2가 62-10	학교법인 한신학원				수유동 499-3	대	79	79		중구 충무로 2가 62-10	학교법인 한신학원				도시계획 시설변경
5	수유동 500-1	대	93	93		강북구 수유동 500	윤중환				수유동 500-2	대	57	57		강북구 수유동 500	윤중환				도시계획 시설변경
6	수유동 501-1	대	77	77		강북구 수유동 501	김용순				수유동 501-2	대	60	60		강북구 수유동 501	김용순				도시계획 시설변경
7	수유동 502-3	대	89	89		강북구 수유동 502	정병애				수유동 502-8	대	72	72		강북구 수유동 502	정병애				도시계획 시설변경
8	수유동 498-17	대	43	43		중구 충무로 2가 62-10	학교법인 한신학원				수유동 498-18	대	38	38		중구 충무로 2가 62-10	학교법인 한신학원				도시계획 시설변경
9											수유동 491-99	학	50	50		종로구 송월길 28(신문로2가 2-27)	서울 특별시 교육감				도시계획 시설변경
10											수유동 491-100	대	40	40		28.98 /253 수유동 491-85 101호	서정원	수유동 491-85 101호	정길순	가등기권	도시계획 시설변경
															28.04 /253 수유동 491-85 102호	한신호 정화숙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한국주택 은행 (창동지원)	근저당		
															29.18 /253 수유동 491-85 201호	이정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국민은행 (수유서)	근저당		

제 2727 호

시

부

2006. 10. 19. (목)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용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용	
10											수유동 491-100	대	40	40	28.04 /253	수유동 491-85 202호	정계형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한국주택 은행 (창동지원)	근저당	도시계획 시설변경
	29.18 /253	수유동 491-85 301호	주광식																		
	28.04 /253	수유동 491-85 302호	안효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한국주택 은행 (수유동)	근저당															
	27.37 /253	수유동 491-85 401호	조영희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국민은행 (북악)	근저당															
	26.33 /253	수유동 491-85 402호	채영익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한국주택 은행 (수유동)	근저당															
	27.84 /253	수유동 491-85 지층 비01호	김홍수																		

제 2727 호

시

보

2006. 10. 19. (목)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사업의 명칭 : 한신대~화계사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사업 시행자 : 강북구청장

제 2727 호

시

구

2006. 10. 19. (목)

연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소재지 지 번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 번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1	수유동 460-2	건물(1층)	30		성북구 장위동 246-40	최천열				수유동 460-2	건물	0		성북구 장위동 246-40	최천열				도시계획 시설변경	
		건물(2층)	30																	
2	수유동 460-3	건물(1층)	29		강남구 압구정동 433 현대A 125-805	정진우				수유동 460-3	건물	0		강남구 압구정동 433 현대A 125-805	정진우				도시계획 시설변경	
		건물(2층)	29																	
		건물(3층)	29																	
3	수유동 500-1	건물	30		수유동 500	윤중환	중구 을지로 2가 50	중소기업 은행	근저당	수유동 500-2	건물	12		서초구 서초동 1640-7	장예린				도시계획 시설변경 (수유동 500)	
							수유동 556-16	조영세	근저당											
4	수유동 501-1	건물	6		수유동 501	김용순	중구 을지로 2가 50	중소기업 은행	근저당	수유동 501-2	건물	0		성동구 성수동 1가 715 중앙하이빌 103-2201	김문호				도시계획 시설변경 (수유동 501)	
5	수유동 502-3	건물	44		수유동 502	정병애	영등포구 여의도동 502	한국주택 은행 (창동지원 센터)	근저당	수유동 502-8	건물	11		동대문구 계기동 122-471	정은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664 주공그린A 1003-303	서완석	가등기		도시계획 시설변경 (수유동 502-3)
		가건물	35								수유동 502	정병애								
		무허가	23								강서구 화곡동 1091 화곡 푸르지오A 139-1502	김나래								

◆ 도봉구공고 제2006-548호
 도봉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서울특별시도봉구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

학1동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도 봉 구 청 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면 적		정원	중사자수	비 고
		대 지	건 물			
방학1동 어린이집	방학1동 649-57	380㎡	517㎡	79명	9	지상3층 지하0층 (방과후, 시간연장 형 보육시설)

2. 위탁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3년
3.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가 소재 하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06. 10. 20(금) ~ 2006. 11. 3(금)
 - 나. 접수 장소 : 도봉구청 가정복지과(3층)
 - 다. 사업 설명회 : 2005. 10. 27(금) 15 : 00(구청 건강지원센터 3층)
5. 신청서 구비서류 ---- 16부(소정양식)
 - ① 수탁운영 신청서
 - ② 수탁신청운영체 현황
 - ③ 수탁신청운영체 재산조서
 - ④ 시설장(내정자) 소개서
 - ⑤ 수탁운영 취지서
 - ⑥ 사회복지시설운영 실적
 - ⑦ 2007년 운영계획
 - ⑧ 위탁운영체 각서
 - ⑨ 자부담 승낙서 등 기타 참고서류
6. 참고사항
 - 가. 위탁운영체 최종 선정후 개별통지함.
 -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가정복지

과(☎ 2289-1521)로 문의바랍니다.

- ◆ 구로구공고 제2006-58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1.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2004-67호(2004. 7.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 계획인가 된 우리구 오류1동 66-2~330-3간 「오류동 동부아파트~오류역간 도로개설공사」 외 5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 같은법률시행령 제102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토목과 (☎ 860-3125)에 비치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10월 19일
 구 로 구 청 장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길 340(구로본동 435번지)

다. 공사완료(준공)현황

연번	사업명칭 (사업위치)	사업 규모	사업시행인가 고시번호 및 일자	공사기간	공사완료 (준공일)
1	오류동 동부아파트~오류역간 도로개설공사(오류1동66-2~330-3)	B=6m, L=430m	구로구고시 2004-67호 (2004.7.20)	2006.3.7 ~2006.9.4	2006.8.21
2	오류1동 오류시장주변 도로개설공사 (오류1동38-29~9-225)	B=6m, L=80m	구로구고시 제2005-65호 (2005.8.11)	2005.9.12 ~2006.11.30	2006.9.28
3	오류시장주변 도로개설공사(3차) (오류1동 38-31주변)	B=6m, L=30m	구로구고시 제2005-77호 (2005.9.29)	2005.9.12 ~2006.11.30	2006.9.28
4	고척동 145주변 도로개설공사 (고척동 133-18~133-19)	B=6m, L=120m	구로구고시 제2005-20호 (2005.3.10)	2006.3.10 ~2006.9.8	2006.6.1
5	오류2동 테니스장~오류남초교간 도로개설공사 (오류2동 184-11번지일대)	B=8m, L=40m	구로구고시 제2005-19호 (2005.3.3)	2005.10.21 ~2006.6.21	2006.6.21
6	오류초교~개봉동간 도로개설공사 (오류1동 31-314~31-196)	B=6m, L=140m	구로구고시 제2004-71호 (2004.7.30)	2005.3.28 ~2006.8.31	2006.8.31

라. 위치도 : 6부(계재생략)

사업소공고

◆ 여성보호센터공고 제2006-1호
보관금 및 보관물품 수령안내

1. 서울특별시여성보호센터(2000.6.15.이전 서울시립부녀보호소)에서 생활하다 퇴소한 자 중 센터에 보관한 보관금 및 보관물품을 현재까지 찾아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하오니 해당자는 빠짐없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반환기간 내에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보관금 및 보관물품은 법적 절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귀속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보호센터 상담실(전화번호 3412-4502~5, 팩스번호 3412-4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19일
여성보호센터소장

가. 반환기간 : 2006. 10. 20.부터 2006. 10. 27.까지
나. 반환장소 : 서울특별시여성보호센터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산 4-1)

다. 반환방법

구분	내용	반 환 방 법	징 구 서 류
보관금 작업비	현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측란의 징구서류를 센터로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송하면 본인·가족임을 확인한 후 통장으로 계좌입금함. 	① 본인 : 통장사본 ② 가족 : 직계존비속관계 증빙서류(의료보험증, 호적(제)적, 주민등록 등본 및 통장사본, 신분증 ※ 통장은 1면 사본임.
보관 물품	귀중품 및 소지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로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사본, 우측란의 징구서류 사본,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수령영수증을 우리센터로 우송하면 확인 후 보관물품을 등기 우송함. 	① 본인 경우 신분증 소지 ② 가족 경우 직계존비속 관계증빙서류(보관금증빙서류와 동일), 신분증

라. 반환대상자 : 권중희 외 91명

- 별첨명단 이기 -

반환대상자 명단

순번	성 명	입소일	퇴소일	퇴소경로	반환보관금 및 보관물품 내역	
					보 관 금	보 관 물 품
1	권중희	1990-06-15	2001-08-10			쌍가락지
2	정순희	1992-04-25	2000-02-10	용인병원	2,000	
3	임쌍문	1993-05-16	2003-06-24	강남병원	42,000	
4	이남숙	1994-11-24	2000-02-25	친지인계	4,000	
5	유은미	1995-01-15	2003-07-05	친지인계	9,460	
6	채성희	1995-02-11	2000-02-03	청량리병원	2,400	
7	유부동	1995-08-10	2000-02-17	용인병원	12,300	

순번	성 명	입소일	퇴소일	퇴소경로	반환보관금 및 보관물품 내역	
					보 관 금	보 관 물 품
8	조숙현	1996-01-18	2003-03-07	친지인계	91,600	
9	장한분	1996-10-31	2003-11-25	출장인계	115,134	
10	김남래	1997-07-26	2000-05-03			홍콩달러2장(10달러)
11	김옥련	1997-10-29	2000-01-10	보라매병원	573,584	
12	정수남	1997-11-20	2000-11-25	보병사망	22,000	
13	이정애	1998-03-07	2000-09-23	강병사망	70,300	
14	김정순	1999-01-26	2000-02-05	보라매병원	34,000	
15	윤순례	1999-02-04	2001-12-16	친지인계	60,520	
16	이혜련	1999-03-23	2000-06-02			손목시계 1점
17	주복격 (주봉격)	1999-06-09	2002-03-11	보라매병원	50,650	도장 1개
18	강영희	1999-06-30	2001-04-03	강남병원	5,500	
19	최우엽	1999-08-12	2000-06-02			전화카드, 승차권
20	김남순	1999-08-18	2000-06-02	컴퓨터전원	50,000	
21	김복순 (김복순)	1999-09-11	2002-05-21	보병사망	69,200	
22	이남순	1999-09-14	2000-09-14			열쇠 1개, 도장 2개
23	김인선	1999-10-20	2000-03-07	강남병원	17,600	
24	(김실문) 김선희	2000-01-17	2000-05-04	강병사망	40,200	
25	남영숙	2000-01-18	2000-01-19	강남병원	10,600	
26	한 금 (허금희)	2000-01-25	2006-04-20			18k 목걸이 1점
27	민순덕	2000-02-10	2000-08-24			알반지 1점
28	신옥순	2000-03-25	2000-04-17	강병사망	161,000	
29	백영미	2000-03-28	2000-07-22	강남병원	25,000	
30	박서운	2000-05-02	2000-05-18	출장인계	14,600	
31	전순자	2000-06-21	2000-06-22	강남병원	9,100	
32	김복순	2000-07-19	2000-10-13	친지인계	20,910	
33	최순옥	2000-08-19	2006-02-11	서울의료원사망	206,456	
34	전순복	2000-08-22	2001-01-03	강남병원	20,030	

순번	성 명	입소일	퇴소일	퇴소경로	반환보관금 및 보관물품 내역	
					보 관 금	보 관 물 품
35	강경자	2000-09-02	2001-04-17	강병사망	47,470	
36	홍남수	2000-09-21	2001-04-26	현대병원	3,450	
37	김애란	2000-10-30	2001-02-01	강남병원	13,520	
38	이신자	2000-11-01	2000-11-06	강남병원	2,000	
39	김연순	2000-11-05	2001-12-17	강남병원	24,300	
40	차분희	2000-11-25	2000-11-30	강남병원	38,010	
41	최분임	2000-12-24	2000-12-24	강남병원	25,610	
42	이을순	2001-01-05	2001-02-20	강남병원	91,000	24k쌍가락지 1쌍
43	김봉학	2001-02-03	2001-06-03	강남병원	31,260	
44	부가족	2001-02-16	2001-07-23	강병사망	7,800	24k링반지 1점
45	부식사	2001-02-26	2001-02-17	강남병원	19,000	
46	박기연	2001-03-15	2001-08-02	용인병원	3,950	
47	정해남	2001-03-29	2001-08-29	귀향	7,100	
48	부서초	2001-04-04	2004-11-26	강병사망	10,000	
49	김태현	2001-04-27	2001-06-25	강남병원	2,000	
50	홍순자	2001-05-25	2001-05-28	강병사망	40,000	
51	박이순	2001-06-14	2001-08-29	강병사망	545,440	
52	임봉순	2001-06-16	2001-06-20	친지인계	17,000	
53	김순희	2001-07-02	2001-07-16	강남병원	50,000	
54	이필조 (이필주)	2001-07-17	2001-07-18			24k링반지 1점
55	김동순	2001-08-03	2003-10-25	강남병원	42,000	
56	신정자	2001-08-04	2002-02-28	강남병원	3,630	
57	금숙자	2001-09-20	2004-03-16			24k반지1점
58	김옥주	2001-09-25	2001-09-26	강남병원	15,000	14k알반지 1점, 14 k알목걸이 1점
59	이춘순	2001-11-12	2001-11-13	강남병원	10,100	
60	김분선	2001-12-20	2002-02-10	귀가	8,700	
61	최은	2001-12-23	2002-02-19	강남병원	9,500	
62	(나귀임) 이이털	2002-01-28	2003-10-01	강남병원	14,000	14k목걸이1점 가짜알반지1점

순번	성 명	입소일	퇴소일	퇴소경로	반환보관금 및 보관물품 내역	
					보 관 금	보 관 물 품
63	박귀례	2002-04-04	2004-01-21			14k알반지2점
64	김꽃송이	2002-05-10	2003-01-24			14K실반지 1점
65	이언년	2002-07-12	2003-03-02	강남병원	19,000	
66	이현순	2002-08-06	2003-06-26	출장인계	50,590	
67	김득남	2002-10-12				14k 반지1개
68	백소해	2002-10-23	2003-09-18	강병사망	10,000	
69	부세해	2002-10-31	2002-12-17	강병사망	53,490	
70	손순례	2002-11-07	2002-11-27	강병사망	735,213	
71	권미정	2002-11-14	2002-11-09	강남병원	12,300	
72	정은분	2002-12-06	2005-09-10	강병사망	8,540	
73	김정희	2003-01-10	2003-01-11	친지인계	40,610	
74	이숙희	2003-01-16	2003-05-13	강남병원	151,000	
75	강순덕	2003-02-09	2003-03-06	강남병원	20,000	
76	김명선	2003-02-12	2003-03-20	강남병원	4,900	
77	조명화	2003-02-15	2003-02-17	강남병원	9,980	
78	백영미	2003-03-28	2000-04-04	강남병원	35,000	
79	정윤덕	2003-05-01	2003-08-04	강남병원	20,400	
80	신효정	2003-05-03	2003-05-07	강남병원	17,150	
81	윤은식	2003-06-14	2003-11-15	강남병원	35,200	
82	최수정	2003-08-07	2004-05-13			14K링반지 1점
83	허순애	2003-08-25	2003-09-14	강남병원	25,150	
84	임삼영	2003-09-30	2003-10-21	귀가	3,100	
85	김순이	2003-10-08	2003-11-14	강남병원	48,500	
86	김영희	2003-11-08	2004-02-07	강남병원	5,100	
87	김영희	2003-11-08	2004-02-17	강남병원	5,100	
88	은운순	2004-01-16	2004-01-31	강남병원	27,250	
89	박영금	2004-01-26	2004-01-26	친지인계	8,000	
90	임양임	2004-02-05	2004-03-24	친지인계	39,550	
91	박분순	2004-02-10	2004-02-17	강병사망	10,140	
92	이순자	2005-02-08	2005-03-02			국민은행통장, 국민카드

◆ 성동소방서공고 제2006-23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성 동 소 방 서 장

등록번호(등록일자)	업 종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비고
성동2006-16 (2006.10.10)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	동우설비 기술사사무소	신현곤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80-13 삼환디지털벤처타워 407호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동소방서 예방과 (☎ 02-452-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구 로 소 방 서 장

◆ 양천소방서공고 제2006-6호
방염처리업 등록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방염처리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 등록일자 : 2006. 10. 11
 - 등록번호 : 제구로2006-20호
 - 업 종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상 호 : (주)신아이엔지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정 영 선(500521-1*****)
 -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64-4 철재상가 22동 302호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로소방서 예방과 (2682-506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19일
양 천 소 방 서 장

- 등록번호 : 제양천2006-1호
 - 업 종 : 방염처리업(합판·목재류)
 - 상 호 : 한국소방안전공사
 - 대 표 자 : 이 민 욱(810805-1*****)
 -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30-1 201호
 - 등록일자 : 2006. 10. 11.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2653-62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파소방서공고 제2006-41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송 파 소 방 서 장

◆ 구로소방서공고 제2006-24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

등록번호	업종(등급 및 분야)	상 호	대표자(법인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제송과 2006-22호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보고건설 주식회사	이순재 (110111-1*****)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43-6	2006.10.10
<p>◆ 강남소방서공고 제2006-24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p>			<p>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6년 10월 19일 강 남 소 방 서 장</p>		
등록번호	업종(등급 및 분야)	상 호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영업 소재지	등록일자
제강남 2006-22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아전이엔씨 주식회사	김 윤 태(490210-1*****) 이 정 태(610907-1*****)	강남구 대치동 890-59 선릉역 롯데골드로드2 527호	2006.10.10
<p>※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남소방서 위험물 안전팀(☎ 568-1191)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p>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1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건설단장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26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2-3번지 등 10필지
 - 면 적 : 1,004㎡(영구 95.95㎡, 일시 908.0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관부식 방지사설 설치
 - 개 요
 - 전선관 $\phi 30\text{mm} \times 502\text{m} = 94.67\text{m}^2$
 - 정류기 $0.8\text{m} \times 0.8\text{m} \times 2\text{개소} = 1.28\text{m}^2$
5. 점용기간 : 2006.10.02~2011.10.0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1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양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1-4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9-402번지
 - 면 적 : 24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안양천 접근경사로 설치
 - 개 요 : 경사로 설치 L=78m, B=3.4m
5. 점용기간 : 영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1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금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본동 890-4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14-45번지
 - 면 적 : 180.3㎡(영구 43㎡, 일시 137.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하천 진입보도 육교 설치
 - 개 요 : 보도육교 설치 L=118.6m, B=4.7m
5. 점용기간 : 영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19호
하천점용(재)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하천점용(재)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59-4번지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378번지선
 - 면 적 : 50㎡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급수관로 설치
 - 개 요 : 급수관로(D=50~100m/m) L=654m, 제수변실 2개소, 계량기실 1개소
- 5. 점용기간 : 영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2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 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95 (동자동 43-229번지)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67-1번지 등 27필지
 - 면 적 : 37,081(영구 4,912㎡, 일시 32,169㎡)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복선전철 노반 설치
 - 개 요 (당 초)
 - <영구시설>
 - 복선전철 지중구조물 : 11.44m×8.09m, L=330m

- 환기구 1개소
- <임시시설>
 - 동부간선도로 우회도로(B=18m) : 가교 L=200m, 토공 L=188m
 - 성동교 남단 우회도로 : 가교 B=4m, L=80m
 - sheet pile : 400×170×15.5, L=660m
 - 가축도(3개소) 및 연결가교, 가제방, 터널작업구 등 각 1식
 - ※ 강재를 이용한 가축도 연결 가교 : B=8m, L=80m

(변 경)

- <영구시설>
 - 복선전철 지중구조물 : 11.44m×8.09m, L=330m
 - 환기구 1개소
- <임시시설>
 - 동부간선도로 우회도로(B=18m) : 가교 L=200m, 토공 L=188m
 - 성동교 남단 우회도로 : 가교 B=4m, L=80m
 - sheet pile : 400×170×15.5, L=660m
 - 가축도(3개소) 및 연결가교, 가제방, 터널작업구 등 각 1식
 - ※ P.C관을 이용한 가설교량 : B=8m, L=63m(P.C관 1,800mm, 110본, 2단2열)

5. 점용기간 : 영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2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119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482번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1-16번지
 -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31-2번지~628-5번지
 - 면 적 : 3,240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가스관로 매설
 - 개 요 : 가스관로 D=500mm, L=5,968m
5. 점용기간 : 2006.08.02~2011.08.01

5. 점용기간 : 2006.08.16~2011.08.15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2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양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1-4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41-3번지(신정교 제방)
 - 면 적 : 101.5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안양천 유지관리 사무실 설치
 - 개 요 : 관리사무실 1식